

2024회계연도 결산 검 토 보 고 서

산 립 청 소 관

2025.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 문 위 원 황 충 연

목 차

I .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1. 2024년도 결산 총괄	1
2. 세입·세출 개요	3
가. 세 입	3
나. 세 출	4
3. 예비비 지출	5
4. 재무회계	5
가. 재정상태	5
나. 재정운영	6
다. 순자산변동	7
II . 회계별 검토의견	8
1. 일반회계	8
가. 개 요	8
1) 세입결산	8
2) 세출결산	10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3
1) 공통: 산림청 세목조정 관련 문제점 개선 필요	13
(1) 과다한 세목조정 지양 필요	15
(2) 세목조정 관련 내부지침 마련 필요	26

2) 국립수목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집행 가능성 없는 일·숙직비 예산 편성 부적정	28
3) 산림과학연구(R&D): 시험연구비 예산 집행 부적정	33
4) 한국임업진흥원 지원: 신청사 설립 관련 소송 및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41
5)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 자체수입 예산 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46
6) 산림헬기 도입·운영: 사업기간 변경 및 타 사업 전용 최소화 필요	51
(1) 실제 소요기간을 고려한 사업기간 변경 필요	52
(2) 산림헬기 도입·교체 사업 예산의 타 사업 전용 최소화 필요 ..	56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8

가. 개 요 58

1) 세입결산	58
2) 세출결산	60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62

1) 조림: K-포레스트관건립 사업의 연례적인 집행부진 문제 개선방안 마련 필요	62
2) 목재이용증진,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이용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예산의 부적정한 통합 집행행위 주의 필요	68
3) 임업기능인양성: 임업기계장비의 낮은 활용률 제고 필요 등	74
(1) 임업기계장비의 낮은 활용률 제고 필요	75
(2)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도입의 실제 소요기간을 고려한 사업 기간 변경 필요	83

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90

가. 개 요 90

1) 세입결산	90
2) 세출결산	90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91
가. 개 요	91
1) 세입결산	91
2) 세출결산	92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94
1) 임대시설: 과도한 수익계약 방식 개선 필요	94
 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01
가. 개 요	101
1) 세입결산	101
2) 세출결산	103

[산림청 소관]

I.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

□ 2024년도 산림청 소관 일반회계 등 5개 회계의 총계 기준 세입 예산액은 1조 1,565억원이며, 1조 2,430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조 1,179억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 11억원과 미수납액 1,240억원이 각각 발생하였으며,

총수입 기준 세입예산액은 4,562억원이며, 5,324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4,073억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 11억원과 미수납액 1,240억원이 각각 발생하였음.

【 2024년도 세입 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대비 수납증감 (B-A)
예 산	1,156,544	1,243,048	1,117,936	1,107	124,005	△38,608
기 금	-	-	-	-	-	-
총 계	1,156,544	1,243,048	1,117,936	1,107	124,005	△38,608
총수입	456,242	532,377	407,265	1,107	124,005	△48,977

※ 자료: 산림청

□ 2024년도 산림청 소관 일반회계 등 5개 회계의 총계 기준 세출 예산액은 3조 5,804억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등에 따른 예산현액은 3조 6,489억원이며, 이 중 3조 5,166억원을 집행하고 744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79억원을 불용하였고,

총지출 기준 세출예산액은 2조 6,126억원이고 전년도 이월 및 예비비 등에 따른 예산현액은 2조 6,812억원이며, 이 중 2조 5,689억원을 집행하고 744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78억원을 불용하였음.

【 2024년도 세출 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구분	세출 예산액	예산 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초과 지출	예비 비	이·전용				
예산	3,580,363	67,798	786	-	42,273 △42,273	3,648,947	3,516,644	74,425	57,878
기금	-	-	-	-	-	-	-	-	-
총계	3,580,363	67,798	786	-	42,273 △42,273	3,648,947	3,516,644	74,425	57,878
총지출	2,612,591	67,798	786	-	42,273 △42,273	2,681,175	2,568,946	74,425	37,804

※ 주: 총지출 = 총계-내부거래(회계간·회계기금간·회계내계정간 거래)-여유자금

※ 자료: 산림청

2. 세입·세출 개요

가. 세 입

□ 2024회계년도 산림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1조 1,565억 4,400만원이며, 1조 2,430억 4,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조 1,179억 3,600만원을 수납(89.9%)하고 불납결손액 11억 700만원과 미수납액 1,240억 500만원이 각각 발생하였음.

【 2024년도 세입 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회계명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일반회계	97,004	151,465	105,920	1,107	44,438	8,91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86,698	998,934	926,903	-	72,031	△59,79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2,024	2,024	-	-	순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8,997	3,426	-	5,571	순증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2,842	81,628	79,663	-	1,965	6,821
합계	1,156,544	1,243,048	1,117,936	1,107	124,005	△38,608

※ 자료: 산림청

□ 수납액은 전년(1조 1,898억 1,200만원) 대비 718억 7,600만원(6.0%) 이 감소하였으며, 시효완성 등으로 11억 700만원을 불납결손 처리 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240억 5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주요 발생사유는 납기미도래, 체납자 재력 부족 등임.

나. 세 출

□ 2024회계년도 산림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3조 5,803억 6,3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등에 따른 예산현액은 3조 6,489억 4,700만원이며, 이 중 3조 5,166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744억 2,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78억 7,8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년도 세출 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회계명	예산액	예산 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 이월	초과 지출	예비비	이·전용				
일반회계	2,144,531	50,116	-	-	41,983 △41,983	2,194,647	2,153,966	20,196	20,485
농특회계	986,698	9,295	-	-	87 △87	995,993	918,370	46,692	30,931
지특회계	376,292	597	-	-	-	376,889	371,260	1,076	4,553
책특회계	72,842	7,790	786	-	203 △203	81,418	73,048	6,461	1,909
총계	3,580,363	67,798	786	-	42,273 △42,273	3,648,947	3,516,644	74,425	57,878
총지출	2,612,591	67,798	786	-	42,273 △42,273	2,681,175	2,568,946	74,425	37,804
내부거래	967,772	-	-	-	-	967,772	947,698	-	20,074

※ 주: 총지출 = 총계-내부거래(회계간·회계기금간·회계내계정간 거래)-여유자금

※ 자료: 산림청

□ 참고로, 이·전용액은 재해복구비 부족액 등으로 기정예산에서 충당하였음.

3.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4. 재무회계

가. 재정상태

【 2024회계연도 산림청 재정상태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2023년	증 감	
			금 액	비 율
자 산	31,675,398	31,303,190	372,208	1.2
부 채	57,278	25,072	32,206	128.5
순자산	31,618,120	31,278,118	340,002	1.1

※ 자료: 산림청

□ 2024년 말 현재 산림청 소관 자산 총계는 31조 6,753억 9,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22억 800만원(1.2%) 증가하였으며,

자산의 주요 증가내역은 기타유동자산 등의 증가에 따른 유동자산 178억 7,800만원 증가, 토지 취득, 입목가격평가 증가 등에 따른 일반유형자산 3,855억 8,000만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24년 말 부채는 572억 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2억 600만원(128.5%) 증가하였으며,

부채의 주요 증가내역은 국유림 매각계약 등에 따른 선수금 증

가로 전년 대비 유동부채 318억 8,800만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024년 말 현재 31조 6,181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00억 200만원(1.1%) 증가하였음.

나. 재정운영

【 2024회계연도 산림청 재정운영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2023년	증 감	
			금 액	비 율
I. 프로그램순원가	2,082,461	2,121,160	△38,699	△1.8
II. 관리운영비	221,022	209,868	11,154	5.3
III. 비배분비용	47,086	61,528	△14,442	△23.5
IV. 비배분수익	231,975	232,174	△199	△0.1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2,118,595	2,160,383	△41,788	△1.9
VI. 비교환수익 등	150	183	△33	△18.0
VII. 재정운영결과(V - VI)	2,118,445	2,160,199	△41,754	△1.9

※ 자료: 산림청

- 2024년 재정운영결과는 2조 1,184억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17억 5,400만원 감소(1.9%) 하였음.

- 주요 감소내역은 프로그램 총원가 감소 등으로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 대비 386억 9,900만원 감소, 대손상각비 감소 등으로 비배

분비용 144억 4,200만원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다. 순자산변동

【 2024회계연도 산림청 순자산변동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I.기초순자산	12,911,856	△2,811,512	21,177,774	31,278,118
II.재정운영결과	-	2,118,445	-	2,118,445
III.재원의조달및이전	-	2,429,937	-	2,429,937
IV.조정항목	-	-	28,510	28,510
V.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12,911,856	△2,500,020	21,206,284	31,618,120

※ 자료: 산림청

□ 기초순자산은 2024년 발생한 순자산변동으로 전년 대비 2,917억 3,200만원 증가한 31조 2,781억 1,800만원이고, 재정운영결과는 전년 대비 417억 5,400만원 감소한 2조 1,184억 4,500만원임.

□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증가에 따른 재원의조달 증가, 무상이전지출 증가에 따른 재원의이전 증가로 전년 대비 179억 2,000만원 감소한 2조 4,299억 3,700만원임.

□ 기초순자산에서 재정운영결과를 차감하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 과 조정항목을 더한 기말순자산은 31조 6,181억 2,000만원임.

II. 회계별 검토의견

1. 일반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 2024년도 일반회계는 관유물매각대 582억 9,300만원, 경상이전 수입 198억 1,400만원, 재산수입 146억 9,000만원 등 970억 4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실제 징수결정액은 경상이전수입 및 관유물매각대 증가 등으로 544억 6,100만원이 증가한 1,514억 6,500만원이 되었음.
- ☐ 징수결정액 1,514억 6,500만원 중 토지매각대 등 관유물매각대 517억 1,600만원,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납금 등 경상이전수입 314억 5,100만원, 토지대여료 등 재산수입 200억 6,200만원 등으로 총 1,059억 2,000만원을 수납하였음.
- ☐ 불납결손액 11억 700만원은 소멸시효 완성 등에 따라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444억 3,800만원의 주요 원인은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이 151억 9,800만원, 납기미도래가 136억 7,400만원, 관계기관 예산부족이 133억 5,400만원 등임.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A)	정 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 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증 감	
						E=C-A	E/A
합 계	97,004	151,465	105,920	1,107	44,438	8,916	△9.2
○ 재산수입	14,690	23,308	20,062	369	2,877	5,372	36.6
- 관유물 대여료	14,022	18,884	17,262	369	1,253	3,241	23.1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668	4,424	2,780	-	1,624	2,132	319.2
○ 경상이전수입	19,814	61,374	31,451	737	29,186	11,637	58.7
-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56	184	56	2	126	-	-
- 변상금 및 위약금	2,715	16,221	2,192	672	13,357	△523	△19.3
- 가산금	5	18	3	11	4	△2	△40.0
- 기타경상이전수입	17,038	44,951	29,200	52	15,699	12,162	71.4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4,207	2,860	2,691	1	168	△1,516	△36.0
- 입장료수입	176	203	194	-	9	18	10.2
- 면허료 및 수수료	129	129	127	-	2	△2	△1.6
- 잡수입	3,902	2,528	2,370	1	157	△1,532	△39.3
○ 관유물매각대	58,293	63,923	51,716	-	12,207	△6,577	△11.3
- 고정자산매각대	145	62	62	-	-	△83	△57.2
- 토지 및 무형자산매각대	58,148	63,861	51,654	-	12,207	△6,494	△11.2

※ 자료: 산림청

2) 세출결산

□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당초 2조 1,445억 3,1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501억 1,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2조 1,946억 4,700만원으로 증가함.

□ 예산현액 중 산림재해대응, 산불예방 및 대응 등 산림재난관리 에 6,516억 1,800만원, 국유재산 관리 등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에 1,823억 7,500만원 등 98.1%인 2조 1,539억 6,600만원이 지출되었음.

□ 다음연도 이월액 201억 9,600만원은 산림재난관리 110억 3,600만원, 산림이용 및 복지증진 55억 9,000만원 등이며, 산림재난 관리 79억 5,400만원,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28억 6,100만원 등 총 204억 8,5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액 이용액				
[합 계]	2,144,531	50,116	-	41,981 △41,981	2,194,647	2,153,966	20,196	20,485
○ 국립수목원 (1100프로그램)	33,258	340	-	22 △71	33,549	32,301	679	569
- 국립수목원 인건비	5,799	-	-	△11	5,788	5,783	-	5
- 국립수목원 기본경비	872	-	-	2 △2	872	863	-	9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액 이용액				
- 국립수목원 지원	26,587	340	-	20 △58	26,889	25,655	679	555
○ 산림과학기술개발 (1200프로그램)	81,113	5,911	-	406 △816	86,614	85,690	-	923
- 국립산림과학원 인건비	22,386	-	-	△419	21,967	21,824	-	143
- 국립산림과학원 기본경비	3,372	-	-	9	3,381	3,313	-	68
- 산림과학기술개발	51,795	5,911	-	397 △397	57,706	57,014	-	692
- 산림과학기술 정보화(정보화)	3,560	-	-	-	3,560	3,540	-	20
○ 국제산림협력 (1300프로그램)	34,214	-	-	-	34,214	34,113	-	101
- 국제산림협력	34,214	-	-	-	34,214	34,113	-	101
○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1500프로그램)	186,148	1,574	-	171 △796	187,097	182,375	1,861	2,861
- 산림정책 지원	13,335	-	-	△3	13,332	13,094	-	238
- 종자 및 묘목 생산 관리	41,692	1,574	-	△477	42,789	39,279	1,861	1,649
- 임업인부채대책	112	-	-	△47	65	42	-	23
- 목재생산관리	9,848	-	-	33 △33	9,848	9,482	-	366
- 한국임업진흥원 지원	28,566	-	-	-	28,566	28,566	-	-
- 국유재산관리	68,852	-	-	138 △236	68,754	68,169	-	585
- 신기후체제 산림 자원관리 기술개발	23,743	-	-	-	24,743	24,743	-	-
○ 산림이용 및 복지 증진 (1700프로그램)	140,513	24,881	-	△1,327	164,067	155,963	5,590	2,514
- 산지관리	7,254	-	-	△138	7,116	7,102	-	14
- 산림복지서비스 기반조성	8,928	17,589	-	-	26,517	26,382	-	135
- 한국산림복지 진흥원 지원	50,199	-	-	-	50,199	50,199	-	-
- 산촌활성화 지원	-	761	-	-	761	692	-	69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운영	74,132	6,531	-	△1,189	79,474	71,588	5,590	2,296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액 이용액				
○ 산림환경 보전 및 증진 (1900프로그램)	140,138	8,902	-	1,579 △2,699	147,920	144,945	1,030	1,945
- 산림생태보전	36,926	-	-	-	36,926	36,023	224	679
-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17,010	374	-	1,579 △1,699	17,264	16,058	478	728
- 국립수목원 조성	3,125	-	-	-	3,125	2,338	328	459
- 한국수목원관리원 지원	58,387	-	-	△1,000	57,387	57,383	-	4
- 정원 조성 및 관리	24,690	8,528	-	-	33,218	33,143	-	75
○ 산림재난관리 (2300프로그램)	658,287	8,508	-	39,777 △35,964	670,608	651,618	11,036	7,954
- 산림재해대응	207,050	1,297	-	39,487 △10,156	237,678	231,092	3,765	2,821
- 산불 예방 및 대응	62,434	1,346	-	200 △8,200	55,780	53,085	729	1,966
- 산림헬기	112,344	5,740	-	90 △17,135	101,039	94,158	5,407	1,474
- 산사태 예방 및 대응	276,459	125	-	△473	276,111	273,283	1,135	1,693
○ 산림행정지원 (7000프로그램)	190,637	-	-	26 △308	190,355	186,737	-	3,618
- 본청 인건비 (총액인건비)	32,449	-	-	△70	32,379	31,555	-	824
- 소속기관 인건비 (총액인건비)	38,465	-	-	△120	38,345	38,103	-	242
- 지방산림청 인건비 (총액인건비)	51,180	-	-	-	51,180	49,959	-	1,221
- 본청 기본경비	13,319	-	-	△48	13,272	12,819	-	452
- 산림항공본부 기본경비	2,321	-	-	-	2,321	2,243	-	78
- 산림교육원 기본경비	928	-	-	5	933	902	-	31
- 국립산림품종관리 센터 기본경비	609	-	-	△1	608	595	-	13
- 지방산림청 기본경비	11,225	-	-	△3	11,222	10,953	-	269
- 산림행정지원	12,133	-	-	21 △23	12,131	12,067	-	64
- 산림자원정보화	14,946	-	-	-	14,946	14,593	-	353
- 국가산림통계	13,062	-	-	△43	13,019	12,948	-	71
○ 회계간거래 (8000프로그램)	680,223	-	-	-	680,223	680,223	-	-
- 회계간 전출(농특)	638,808	-	-	-	638,808	638,808	-	-
- 회계간 전출(책특)	41,415	-	-	-	41,415	41,415	-	-

※ 자료: 산림청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공통: 산림청 세목조정 관련 문제점 개선 필요

- 산림청은 매년 상당규모의 세목조정을 통해 사업비의 비목별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세부사업에서 세목조정 건수와 금액이 집중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비목별 집행소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연례적이고 과도한 세목조정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산림청은 세목조정을 통해 동일한 비목에서 감액 및 증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등 불필요한 세목조정을 관행적으로 실시하여,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비목별 예산 구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산림청은 세목조정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 및 검토 절차를 규정한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향후 사업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세목조정이 내부지침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결산 개요

□ ‘세목’이란 행정과목인 ‘목’의 하위 예산과목으로, ‘세목조정’은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위해 동일 목 범위 내에서 세목 간에 예산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¹⁾

세목조정은 세항(단위사업) 간 목에 편성된 금액을 상호융통하는 ‘전용’보다는 한 단계 낮은 예산 단위인 세목 간에 금액을 상호 융통하는 것임.

1) 세목조정은 세목간의 금액변동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해당 목의 총액에는 변동이 없음. 세목조정의 예시로는 210목 내에서 210-01(일반수용비)와 210-02(공공요금 및 제세)간 조정하는 것이 있음.(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4. 1.)

□ 산림청은 2024년도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총 59개 세부사업에서 935건의 세목조정을 통하여 137억 3,400만원의 예산을 조정하였음.

【 2024년도 세부사업별 세목조정 현황 】

대상 회계	대상 세부사업	세목조정	
		건수	금액
4개	59개	935건	137억 3,400만원
일반회계	47개	639건	88억 3,100만원
농특회계	9개	206건	39억 7,700만원
지특회계	1개	82건	3억 2,000만원
책특회계	2개	29건	6억 700만원

※ 주 : 다수 세부사업에서의 각 세목조정이 한 건의 '요구번호'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바, 세목조정
합계 건수는 각 회계별 세목조정 건수의 총합과 차이가 있음

※ 자료 :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1) 과도한 세목조정 지양 필요

□ 산림청의 세목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산림청은 2024년도에 총 59개 세부사업에서 935건의 세목조정을 통하여 137억 3,400만원의 예산을 조정하였는데, 매년 상당규모의 세목조정을 통해 사업비의 비목별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세부사업에서 세목조정 건수와 금액이 집중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비목별 집행소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연례적이고 과도한 세목조정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국회는 이미 2022회계연도 및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산림청에 대하여 과도한 세목조정을 지양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도 산림청의 세목조정은 여전히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산림청의 세목조정 관련 국회 시정요구사항 】

구 분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사항	유형	조치 결과
2022 회계 연도 결산	연례적 과다 한 세목조정 지양 필요	산림청은 국회에서 정한 비목별 한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연례적으로 과다한 세목 조정을 지양할 것	제도 개선	1·2차 소속기관 장 교육
2023 회계 연도 결산	과다한 세목 조정 지양	산림청은 비목별로 집행소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비목별로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국 회에서 심사한 비목별 한도 내 에서 집행하도록 하여 국회 시 정요구사항을 준수할 것	제도 개선	소요가 많은 세 부사업은 비목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2025년 도 예산 편성

※ 자료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보고서」·「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보고서」

이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세목조정 건수가 가장 많았던 사업은 지방산림청 기본경비 사업(100건), 산불방지대책 사업(99건), 임도시설(지원)(82건) 순으로, 세목조정 금액이 가장 큰 사업은 산림헬기 도입·운영 사업(26억 7,600만원), 숲가꾸기(18억 3,0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10억 7,7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 2024년도 세부사업별 세목조정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연번	회계	세부사업명	건수	금액
1	일반회계	국립수목원 인건비(총액인건비)	2	76
2	일반회계	국립수목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1	5
3	일반회계	국립수목원 운영	1	26
4	일반회계	산림생물종연구(R&D)	5	126
5	일반회계	국립산림과학원 기본경비(R&D)(총액인건비)	23	301
6	일반회계	국립산림과학원 기본경비(R&D)	1	2
7	일반회계	산림과학연구(R&D)	6	54
8	일반회계	농림위성융합 지능형 산림특화정보기반연구(R&D)	2	40
9	일반회계	국제산림협력	6	46
10	일반회계	산림정책개발	3	48
11	일반회계	산림탄소관리 및 활용 기반구축	1	7
12	일반회계	산림경영계획작성	2	51
13	일반회계	묘목생산	31	585
14	일반회계	목재생산관리	18	32
15	일반회계	목재제품 품질관리	18	39
16	일반회계	국유림 확보 및 관리	7	369
17	일반회계	산지관리	1	9
18	일반회계	산림휴양등산증진	9	29
19	일반회계	산림교육치유활성화	26	124
20	일반회계	산림복원	5	116
21	일반회계	백두대간보전	4	20
22	일반회계	산림생물다양성증진	38	230
23	일반회계	정원 조성관리	1	117
24	일반회계	산림재해대책비	18	312
25	일반회계	산림재해일자리	64	241
26	일반회계	산불방지대책	99	469
27	일반회계	산림헬기 도입·운영	15	2,676
28	일반회계	사방사업	41	270
29	일반회계	산사태재난 경계피난	7	23
30	일반회계	본청 인건비(총액인건비)	1	4.7

연번	회계	세부사업명	건수	금액
31	일반회계	산림항공본부 인건비(총액인건비)	1	666
32	일반회계	본청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	1	0.08
33	일반회계	산림재난통제관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1	4
34	일반회계	본청 기관운영 기본경비	19	888
35	일반회계	본청 전산운영경비	1	0.3
36	일반회계	산림산업정책국 기본경비	3	29
37	일반회계	산림복지국 기본경비	12	80
38	일반회계	산림항공본부 기본경비	8	25
39	일반회계	산림교육원 기본경비	2	15
40	일반회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기본경비	5	15
41	일반회계	지방산림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9	11
42	일반회계	지방산림청 기본경비	100	434
43	일반회계	지방산림청 운영지원	10	12
44	일반회계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6	101
45	일반회계	산림행정성과관리	1	6
46	일반회계	산림인력개발	2	25
47	일반회계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2	72
48	농특회계	조림	42	512
49	농특회계	숲가꾸기	44	1,830
50	농특회계	청정임산물이용증진	2	15
51	농특회계	임산물생산기반조성	13	27
52	농특회계	목재산업육성	8	235
53	농특회계	목재이용증진	2	36
54	농특회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12	64
55	농특회계	임업기능인양성	11	181
56	농특회계	산림병해충방제	72	1,077
57	지특회계	임도시설(지원)	82	320
58	채특회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경비(손익)(총액인건비)	3	11
59	채특회계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손익)	26	596
합 계			935*	13,734

※ 주 : 다수 세부사업에서의 각 세목조정이 한 건의 '요구번호'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바, 세목조정
 합계 건수는 각 세부사업에서의 세목조정 건수의 총합과 차이가 있음

※ 자료 : 산림청

즉, 상위 3개의 사업에서 전체 세목조정 건수의 30.1%, 전체 세목조정 금액의 40.7%가 나타나는 등 일부 세부사업에서 세목조정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이 일부 세부사업에서의 과도한 세목조정은 2024년뿐만 아니라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주요 세부사업별 세목조정(건수 기준) 】

(단위 : 건,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전체	1,991	100.0	2,355	100.0	1,971	100.0	935	100.0
지방산립청 기본경비	248	12.5	239	10.1	243	12.3	100	10.7
임도시설(지원)	148	7.4	217	9.2	200	10.1	82	8.8
산불방지대책	194	9.7	243	10.3	168	8.5	99	10.6

※ 자료 : 산림청

【 주요 세부사업별 세목조정(금액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15,956	100.0	19,981	100.0	17,658	100.0	13,734	100.0
산림헬기 도입·운영	1,211	7.6	3,384	16.9	3,478	19.7	2,676	19.5
숲가꾸기	1,094	6.9	1,343	6.7	1,874	10.6	1,830	13.3
산림병해충 방제	625	3.9	773	3.9	1,264	7.2	1,077	7.8

※ 자료 : 산림청

산림청은 과도한 세목조정 발생 원인으로 다수 재무관서에서 운용, 사업 여건·집행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세목조정 시행, 감리비 예산 부족으로 인한 공사비 예산의 세목조정 등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 주요 세부사업별 세목조정이 과도하게 발생한 사유 】

구 분	세부사업명	과도한 세목조정 사유
건수 기준	지방산림청 기본경비	○ 다수 재무관서(총 32개, 지방청 5, 국유림관리소 27)에서 운용 ○ 세목조정이 가장 많은 운영비(210목)의 경우는 '23년 대비 11.7% 감소되어 신축 건물 운영비 미반영, 기존 시설물 운영비 감축, 공용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세목조정 실시
	임도시설(지원)	○ 다수 재무관서(총 32개, 지방청 5, 국유림관리소 27)에서 운용 ○ 현장업무가 대부분으로 현장감독을 위한 차량 임차비 및 임도시설 관리를 위한 임도관리단 차량 운영을 위한 유류비, 임도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임업기계장비(굴삭기, 덤프트럭 등) 노후화에 따른시설장비유지비 부족으로 세목조정 실시
	산불방지대책	○ 산불예방·진화 등 산불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56개 기관별(본청1, 지방청 5, 국유림관리소 27, 산림항공본부·관리소 13, 산림과학원 등 10) 사업 여건, 집행 상황 등이 달라 부족액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세목조정을 통해 운영 ○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재무관서별 산불 관련 각종 시스템 운영 및 통신료 부족, 산불진화차량 등 장비 노후화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등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세목조정 실시

구 분	세부사업명	과도한 세목조정 사유
금액 기준	산림헬기 도입·운영	○ 산림항공본부와 각 산림항공관리소 노후화 된 격납고 유지보수 비용 부족, 러-우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금융제재로 민간부품 구입을 통해 카모프 헬기 가동율을 높이고자 고가의 헬기 부품 구매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부족, '24년도 신규로 개소한 비무장지대 산림항공관리소의 청사 관리용역비 추가 소요 발생 등 원활한 산림헬기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세목조정 실시
	숲가꾸기	○ 세목조정의 대부분이 감리비 예산 부족으로 공사비에서 감리비로 세목조정한 사항임 ○ '07년 감리비 요율반영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었으나, 인건비 증가함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감리비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7%로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감리비가 부족하게 되어 세목조정으로 감리비 활용
	산림병해충방제	○ 세목조정 대부분은 감리비 예산 부족하여 공사비에서 감리비로 변경한 사항임 ○ 대부분의 방제사업은 '08년 예산안 편성기준('07 감리비 요율반영)부터 동일한 감리비 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현실단가와 맞지 않아 감리비가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세목조정

※ 자료 : 산림청

2024년에도 유사한 사업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된 것은 산림청이 세목조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둘째, 산림청은 세목조정을 통해 동일한 비목에서 감액 및 증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등 불필요한 세목조정을 관행적으로 실시하여,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비목별 예산 구분의 취지

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주의할 필요가 있음.

산림청은 ① 특정 비목(A)의 예산을 세목조정(감액)하고 다른 비목의 예산을 다시 특정 비목(A)으로 세목조정(증액)하는 행위를 단기간에 반복하거나,

【 상반기 지방산림청 기본경비 사업 일반수용비 세목조정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비목	금액	~으로 비목	세목조정 사유
2024.01.10	210-01	0.3	210-09	시설장비유지비 부족
2024.01.12	210-08	5.6	210-01, 210-09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부족
2024.01.15	210-01, 210-09	5.6	210-08	유류비 부족
2024.01.18	210-01	0.8	210-09	시설장비유지비 부족
2024.01.24	210-01	0.3	210-09	시설장비유지비 부족
2024.01.29	210-08	1.0	210-01	일반수용비 부족
2024.01.31	210-01, 210-02 210-15	2.4	210-09	시설장비유지비 부족
2024.02.16	210-08	4.0	210-01, 210-16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부족
2024.02.20	210-01, 210-09	0.9	210-02	공공요금및제세 부족
2024.02.21	210-08	3.3	210-01, 210-15	일반수용비, 관리용역비 부족
2024.03.05	210-01	0.1	210-16	기타운영비 부족
2024.03.20	210-08	2.0	210-01	일반수용비 부족
2024.03.20	210-01	1.7	210-02	공공요금및제세 부족
2024.03.28	210-08	6.0	210-01, 210-02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부족
2024.04.18	210-01	1.0	210-02	공공요금및제세 부족
2024.04.30	210-01	1.6	210-16	기타운영비 부족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세목조정 사유
	비목		비목	
2024.05.01	210-01, 210-07 210-08, 210-09	26.2	210-02	공공요금및제세 부족
2024.05.10	210-07, 210-08	1.3	210-01	일반수용비 부족
2024.05.23	210-07, 210-08 210-09, 210-11	24.3	210-01, 210-02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부족
2024.05.24	210-08	13.0	210-01, 210-02 210-16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기타운 영비 부족
2024.05.28	210-08	2.0	210-01	일반수용비 부족
2024.05.29	210-08	2.0	210-01, 210-02	일반수용비 부족
2024.06.04	210-01	0.1	210-02	공공요금및제세 부족
2024.06.05	210-01	2.5	210-02	공공요금및제세 부족
2024.06.07	210-01	4.0	210-08	유류비 부족
2024.06.10	210-08	0.5	210-01	일반수용비 부족
2024.06.10	210-01	0.4	210-02	공공요금및제세 부족
2024.06.25	210-01	1.6	210-03	피복비 부족

※ 자료 :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회계연도 초반에 특정 비목(B)의 예산을 다른 여러 비목의 예산으로 세목조정(감액)하고 회계연도 말에 특정 비목(B)의 예산을 다른 여러 비목의 예산으로부터 세목조정(증액)하는 등의 행위를 관행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본청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 일반수용비 세목조정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세목조정 사유
	비목		비목	
2024.03.15	210-01	126	210-14	정책 홍보를 위한 용역비 부족에 따른 조정
2024.03.18	210-01	31	210-14	정책 홍보를 위한 용역비 부족에 따른 조정
2024.03.26	210-01	5	210-14	정책 홍보를 위한 용역비 부족에 따른 조정
2024.04.19	210-01	122	210-14	기관 청렴도 향상 등을 위한 용역비 부족에 따른 조정
2024.07.03	210-01	50	210-14	정책 홍보를 위한 용역비 부족에 따른 조정
2024.07.08	210-01	1	210-07	정책 홍보 관련 임차료 부족에 따른 조정
2024.07.29	210-01	41	210-14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비 부족에 따른 조정
2024.08.19	210-01	60	210-14	홍보 관련 용역비 부족에 따른 조정
2024.08.26	210-07	5	210-01	청사운영 관련 수용비 부족에 따른 조정
2024.10.07	210-01	8	210-07	임차료 부족에 따른 조정
2024.11.04	210-07	17	210-01	청사운영 관련 수용비 부족에 따른 조정
2024.12.02	210-02	62	210-01	물품 구매, 수용비성 지출 등 기관 운영을 위한 수용비 부족에 따른 조정
	210-03	9		
	210-07	51		
	210-14	10		
	210-16	33		
2024.12.02	220-02	58	220-01	출장여비 증가로 인한 국내여비 부족에 따른 조정
	220-03	1		
2024.12.10	210-02	4	210-01	수용비성 지출을 위한 수용비 부족에 따른 조정
2024.12.18	210-02	3	210-01	소모성 물품 구매를 위한 수용비 부족에 따른 조정
2024.12.18	210-07	21	220-01	소모성 물품 구매를 위한 수용비 부족에 따른 조정
2024.12.18	220-02	3	210-01	출장여비 증가로 인한 국내여비 부족에 따른 조정
2024.12.24	210-08	3	210-01	소모성 물품 구매를 위한 수용비 부족에 따른 조정
2024.12.27	210-02	5	210-01	물품 구매, 수용비성 지출 등 기관 운영을 위한 수용비 부족에 따른 조정
2024.12.27	210-07	3		
2024.12.27	210-08	4		
2024.12.30	210-02	4	210-01	소모성 물품 구매를 위한 수용비 부족에 따른 조정

※ 자료 :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일례로, 위 사례의 경우 세목조정 금액의 단순합은 7억 4,200만원(a)인데, 실제로 일반수용비(210-01목)에서 증액·감액의 반복으로 발생한 최종적인 금액 변동은 1억 4,600만원(b)에 불과하여, 세목조정 금액 중 19.7%(b/a)를 제외한 80.3%는 불필요하게 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종합하면, 산림청은 사업별 적정 비목과 비목별 소요액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담당 직원 등을 대상으로 세목조정을 최소화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국회에서 정한 비목별 한도내에서 집행하여 세목조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세목조정은 예산의 신축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비목별로 부여된 일정한 지출한도를 조정하는 것이므로 예측할 수 없는 소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불필요한 세목조정을 관행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산림청이 사실상 동일 목 내의 예산을 실무적으로 별다른 구분없이 집행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비목별 예산 구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세목조정 관련 내부지침 마련 필요

- 「국가재정법」에 법적 근거가 있는 예산의 이용·이체·전용과 달리 세목조정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으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세출예산 집행지침 또는 다른 규정에 별도의 제한 또는 사전협의 규정이 없는 한 자체 내부지침에 따라 조정·집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산림청은 세목조정과 관련하여 내부지침이 부재하여, 세부사업의 소관 실·국마다 상이한 절차에 따라 세목을 조정하는 등 세목조정 관련 내부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일부 세부사업의 소관 실·국에서는 사업개요, 변경 사유(증액 필요성, 감액 재원), 변경 내역, 집행 내역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세목조정 요청서’를 작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관실 등 일부 실·국의 경우 본청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의 세부사업에서 별도의 내부 결재 과정 없이, 사업 담당자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비목별 조정 금액을 입력하기만 하면 세목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림청은 이러한 절차상 사유로 인하여 2024년도 결산을 검토하는 현 시점에서는 2024년도에 발생한 세목조정의 사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는 실정임.

- 이와 같이 별도의 결재나 검토 없이 사업 담당자가 임의로 세목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세목조정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세목조정에 대한 국회 결산 심사를 어렵게 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할 위험성을 높일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산림청은 세목조정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결재 및 검토 절차를 규정한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향후 사업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세목조정이 내부지침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국립수목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집행 가능성 없는 일·숙직비 예산 편성 부적정

- 산림청은 국립수목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사업 예산 편성 시 집행가능성이 없는 일·숙직비 예산을 연례적으로 편성하여 타사업에 집행하거나 불용하고 있는데, 향후 이와 같은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립수목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사업은 국립수목원의 안정적 기관운영에 필요한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 1억 6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하였음²⁾.

【 2024년도 국립수목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국립수목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106	-	7 △7	106	105	-	1	106

2)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국립수목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1118-200)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의 일·숙직비(210-06목)는 국립수목원의 일직 및 숙직 근무자에게 일·숙직에 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립수목원은 2024년도 예산액 700만원 전액을 세목조정 및 이용하였음.³⁾

【 2024년도 국립수목원 일·숙직비(210-06목)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일·숙직비(210-06)	7	-	△7	-	-	-	-	5

※ 자료 : 산림청

- 당직은 일·숙직으로 구성되며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를 경계하고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하여 당번을 정하여 하는 근무로,

국립수목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⁴⁾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⁵⁾ 및 「산림청 당직 및 소방

3) 동 세부사업의 특근매식비(210-05목)로 500만원을 세목조정하였고, 산림재해대책비(2331-300) 사업의 공사비(420-03목)로 200만원을 이용하였음.

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숙직근무자·방호직공무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규정(산림청훈령)」 6)에 따라 당직을 운영하고 있음.

□ 국립수목원은 2019년 이후 연례적으로 일·숙직비를 이·전용하거나 불용하고 있는데,

【 연도별 국립수목원 일·숙직비(210-06목) 결산 】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19	16,600	-	△738	15,862	12,300	-	3,562
2020	16,600	-	△1,512	15,088	3,650	-	11,438
2021	16,600	-	△1,000	15,600	800	-	14,800
2022	16,600	-	-	16,600	-	-	16,600
2023	16,600	-	△3,240	13,360	-	-	13,360
2024	7,360	-	△7,214	146	-	-	146

※ 자료 : 산림청

5)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당직의 편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有人警備)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6)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림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편성) 당직근무는 당직근무자 1인으로 편성한다. 다만, 비상사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인원 증원 및 상위직급으로 보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경비용역업체 근무상태의 점검)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경비용역업체의 비상 시 대응상태 등을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이는 2019년 7월 국립수목원에서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및 청원경찰 주야간 근무 등 청사 보안조치 확립 후 재택당직 제도를 도입하여 2020년 9월부터는 토·일요일 사무실 일직 근무도 재택근무로 전환하면서 일·숙직비 지급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매년 집행가능성이 없는 일·숙직비 예산을 연례적으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임.

【 당직 운영체계 변경 경과 】

- ('19.7.1.) 국립수목원 재택당직 실시(1차)
 -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청원경찰 주야간 근무 등 청사 보안조치 확립
- ('20.8.21.) 당직용 휴대전화 사용
 - (당초) 당직자 휴대전화 착신전화 → (변경) 당직용 휴대전화 사용
- ('20.8.31.) 국립수목원 당직 운영체계 변경 : '20.9.5.(토)부터 적용

구분	당초	1차변경(2019.7.)	2차변경(2020.9.)~
주간	(월~금) 숙직(남자직원)	(월~금) 당직자 각각 편성 - 18~20시 : 사무실 근무 - 20시~익일 9시 : 재택근무	(월~금) 당직자 각각 편성 - 18~20시 : 사무실 근무 - 20시~익일 9시 : 재택근무
주말	(토~일) - 일직(여자직원) - 숙직(남자직원)	(토~일) 당직자 각각 편성 - 일직 : 사무실 근무 - 숙직 : 재택근무	(금~일) 당직자 1인 편성 - 금 18~20시 : 사무실 근무 - 금 20~ 월 9시 : 재택근무 * 당직비 미지급

※ 자료 : 산림청

□ 따라서 산림청은 국립수목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사업 예산
편성 시 집행가능성이 없는 일·숙직비 예산을 연례적으로 편성
하여 타사업에 집행하거나 불용하고 있는데, 향후 이와 같은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

3) 산림과학연구(R&D): 시험연구비 예산 집행 부적정

-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이 시험연구비를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게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에 집행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것임.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은 부적정한 시험연구비 집행 규모를 제외한 실제 시험연구비 소요를 정확하게 산출하고 이를 향후 예산편성 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산림과학연구(R&D) 사업은 산림자원 조성·이용과 환경이 조화된 산림과학기술개발을 통해 세계 일류의 산림과학기술력을 확보하고 국민행복, 국토건강, 세계녹화를 선도하는 산림과학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⁷⁾, 2024년도 예산 410억원을 편성하여 408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6,100만원을 불용하였음⁸⁾.

【 2024년도 산림과학연구(R&D)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산림과학연구(R&D)	41,000	351	451 △451	41,351	40,890	-	461	42,368
-시험연구비(210-13)	17,867	-	-	17,867	17,718	-	149	18,471

7) ①산림 생태계서비스 및 보전·복원 연구, ②숲 기반 산림복지 연구, ③국제 및 남북 산림협력 연구, ④산림생명자원 이용 임업소득 증대 연구, ⑤목재 생산 및 이용 기술 연구, ⑥산림방재연구, ⑦시험림 및 연구사업 기반구축을 지원하는 것임.

8)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산림과학연구(R&D)(1251-300)

나) 검토의견

□ 산림과학연구(R&D) 시험연구비는 ①산림생태계 보전·복원 및 생태계서비스 기반 구축, ②숲 기반 산림복지 연구, ③국제 및 남북 산림협력 연구, ④산림생명자원 이용 임업소득 증대 연구, ⑤목재 생산 및 이용 기술 연구, ⑥산림방재연구, ⑦시험림 및 연구사업 기반구축 등 7개 연구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산림과학연구(R&D) 사업 시험연구비(210-13)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연구과제 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7,867	-	-	17,867	17,718	-	149	18,471
산림생태계 보전·복원 및 생태계서비스 기반 구축	5,447	-	-	5,447	5,402	-	45	5,666
숲 기반 산림복지 연구	1,029	-	-	1,029	1,020	-	9	1,248
국제 및 남북 산림협력 연구	908	-	-	908	900	-	8	778
산림생명자원 이용 임업소득 증대 연구	5,329	-	-	5,329	5,284	-	45	4,992
목재 생산 및 이용 기술 연구	3,465	-	-	3,465	3,436	-	29	3,778
산림방재연구	1,209	-	-	1,209	1,199	-	10	1,529
시험림 기반구축	480	-	-	480	477	-	3	480

※ 자료 : 산림청

- 「국가재정법」 제45조 및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예산의 집행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고, 시험연구비는 국가시험연구기관 등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경비에만 집행할 수 있음.
-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시험연구비는 10개 세목이 통합된 비목으로,⁹⁾ 국가시험연구기관 등에서 비목 간의 전용 절차를 생략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음. 다만,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항목별 사용 내역에 대한 통제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됨.
- 그런데, 2024년도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과학연구(R&D) 사업 시험연구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별첨] ‘시험연구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로 집행한 명세’와 같이 총 178억 6,700만원 중 2억 9,500만원을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에 부적절

9)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비목	세목(내역)
일용임금(110-04)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일반수용비(210-01)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210-03)	피복비
임차료(210-07)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장비 리스료 등
유류비(210-08)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 원동기 등 동력장치 등에 필요한 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210-09)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
재료비(210-1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등
여비(220-01/02)	국내/국외여비

※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고용부담금(320-09)을 시험연구비에 추가

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임.

□ 구체적으로 보면, 국립산림과학원 기본경비(1218-209)에서 집행하여야 할 시무식, 퇴임식, 식목일 행사, 을지훈련, 부서별 소통 간담회 및 전직원 워크숍 등의 기관 행사 참석에 국내여비를 집행하였고,

직원 교육과 관련한 신규임용자 및 승진관리자과정, 퇴직예정자 교육, 역량강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등에 교육비 및 교육 참석 여비를 집행하였으며, 산불진화지휘자과정 해외 연수를 위하여 국외여비를, 산불단속과 기재부 등 타 부처 대응 관련, 그 밖에 직원 빙모상 조문, 원장님 공부방 참석 등의 국내 여비를 시험연구비에서 집행하였음.

또한, 전직원 워크숍 외부강사 수당과 산림과학원 브랜드 제고를 위한 홍보워크숍 전문가 강연 수당 및 현수막 제작 등에 일반 수용비를, 기간제근로자 휴게실 확장 공사 등에 시설장비유지비를 집행하였고, 특히, 시험연구비의 10개 통합 비목에 해당하지 않는 월별 승강기안전관리·청사보안·전화시설보수·전기안전관리 및 폐기물 수거관리를 위하여 관리용역비¹⁰⁾를 집행하였음.

10)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관리용역비(210-15목) p.161)

○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등 기관의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관리 업무 일체를 일정기간 동안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 민간업체 등에 대행시키는 비용

*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는 특정 시설장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인 반면, 관리용역비(210-15목)는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및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

□ 국립산림과학원의 부적정한 시험연구비 집행은 시험연구비의 경우 해당 시험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를 별도 비목에 계상하도록 규정한 「예산안 편성지침」을 따르지 못한 것으로,¹¹⁾

이미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의 감사원 감사결과 시험연구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본경비 및 인건비 등을 시험연구비 예산으로 집행하여 주의 요구를 받았던 사항임에도, 여전히 부적정한 시험연구비 집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¹²⁾

□ 따라서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이 시험연구비를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게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에 집행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것임.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은 부적정한 시험연구비 집행 규모를 제외한 실제 시험연구비 소요를 정확하게 산출하고 이를 향후 예산편성 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관리용역비(210-15목)는 시험연구비의 10개 통합 비목에 해당하지 않음.

11)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시험연구비(210-13목) p.225)

□ 시험연구비는 9개 경비를 통합한 비목이므로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통합된 비목은 별도 계상을 제한

○ 다만, 해당 시험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별도 비목에 계상

* 연구과제 수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기념품 제작, 홍보책자 발간, 직원 워크숍 개최 비용 등

12) 산림청 기관운영감사(국립산림과학원, “시험연구비 예산 집행 부적정”, 2015년 5월 21일)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2개 기관 재무감사(국립산림과학원, “시험연구비 예산 집행 부적정”, 2018년 4월 19일)

[별첨]

【시험연구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로 집행한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주요 부적정 집행내역	지출일자	지출금액
직원 교육 관련 국내교육비, 국내여비 및 임차료	▶ 퇴직예정공무원과정(교육비)	6.11	33,335
	▶ 5급 승진관리자과정(교육비)	11.26	
	▶ 신입실무자과정(교육비)	12.2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과정(교육비)	12.9	
	▶ 산림청 신입실무자과정 교육(여비)	2.29	
	▶ 리더쉽역량강화 과정(여비)	3.8	
	▶ 역량평가 대비 과정 교육(여비)	3.29	
	▶ 신규 임업연구사 소통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여비)	3.29	
	▶ 석박사연구원 신규자 오리엔테이션 참석(여비)	6.27	
	▶ 임용장 수여식 참석(여비)	7.12	
	▶ 5급 승진관리자과정(여비)	7.12	
	▶ 민원 및 갈등관리과정 교육(여비)	7.17	
	▶ 신규 공무원근로자 오리엔테이션 참석(여비)	8.13	
	▶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교육 강의(여비)	9.4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득 교육(여비)	9.11	
	▶ 안전관리감독자 제주지회 집합교육(여비)	9.12	
	▶ 공무원연금공단 미래설계 교육 참석(여비)	11.29	
	▶ 정책 발표 역량 강화 교육(여비)	12.9	
	▶ 신입임용자 소통·역량강화 프로그램(단체버스 임차)	7.24	
	등 유사 집행내역 170건		
기관 행사 등 국내여비 및 임차료	▶ 산림청 신년인사회 참석(여비)	1.25	148,395
	▶ 국립산림과학원 시무식 참석(여비)	1.26	
	▶ 산불예방캠페인 및 청림실천캠페인(여비)	2.8	
	▶ 홍보영상 자료 수집(여비)	2.21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부서별 소통간담회(여비)	2.27	
	▶ 조직문화 개선 TF 참석(여비)	3.7	
	▶ 나무 나누어주기 및 식목일 행사장 점검(여비)	4.9	
	▶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여비)	4.12	
	▶ 산림박람회 장소 선정 현장평가 참석(여비)	4.12	
	▶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제3차 운영위원회 참석(여비)	4.15	
	▶ 중앙산림재난상황실 방문(여비)	4.18	
	▶ 원장님과 연구책임자와의 대화 참석(여비)	5.3	

구분	주요 부적정 집행내역	지출일자	지출금액
	▶ 기관 브랜딩 강화 아이디어 공모전 발표(여비) ▶ 국토녹화 50주년 기념관 운영 TF 회의 참석(여비) ▶ 성과관리위원회 참석(여비) ▶ 산림연구 안전보건확립을 위한 연구소 전직원 안전체험(여비) ▶ 산림청 청렴도 향상 TF 2차 회의 참석(여비) ▶ 퇴임식 참석(여비) ▶ 원레조회 및 시상식 참석(여비) ▶ 한·독 50주년 기념행사 지원(여비) ▶ 부·과장 워크숍 참석(여비) ▶ 부서별 성과목표치 변경 협의(여비) ▶ 청장님 국별 소통간담회 참석(여비) ▶ 을지훈련 국가중요시설 통합훈련 참석(여비) ▶ 기자브리핑 지원(여비) ▶ 노사협의회 및 연구관 승진 심사 참석(여비) ▶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개소식 행사 지원(여비) ▶ 원장님 난아연 방문 및 현장답사 지원(여비) ▶ 재난 관련 기관장 간담회 참석(여비) ▶ 임업교육충동문화 세미나 참석(여비) ▶ 연말총회 참석(여비) ▶ 목재교육 전문과정 목재교육 개론 평가시험 문제 검토(여비) ▶ 국립산림과학원 전직원 워크숍 참석(여비) ▶ 여비지출관련 은행업무(여비) ▶ 언론인 간담회(제주시)(여비) ▶ 국립산림과학원 브랜드 제고를 위한 홍보워크숍(회의실 임차) 등 유사 집행내역 1,361건	5.13 5.14 6.3 6.27 6.28 7.17 7.17 7.24 8.12 8.19 8.21 9.4 9.10 9.11 10.2 10.15 10.22 10.24 12.3 12.9 12.13 12.26 12.27 5.14	
국외여비	▶ 산불진화지휘자과정 해외연수	9.10/27	4,933
산불단속 관련 국내여비	▶ 산불기동단속	4.18	10,067
	▶ 산불지휘차량 수리 등 등 유사 집행내역 125건	12.26	
타 부처 대응 관련 국내여비	▶ 인사혁신처 업무협의	2.20	3,671
	▶ 산림유량관측망 구축사업 등 산사태 예산 수시배정을 위한 기재부 추가 설명회 참석	6.18	
	▶ 기재부 예산설명 참석	6.25	
	▶ 총리님 방문에 따른 업무지원	7.26	
	▶ 국감 예상쟁점 검토회의	11.4	
	등 유사 집행내역 31건		
기타 국내여비	▶ 직원 빙모상 조문	6.27	1,199
	▶ 원장님 공부방 참석	9.11	

구분	주요 부적정 집행내역	지출일자	지출금액
	▶ 산림환경학전공 박사학위 논문심사 등 유사 집행내역 12건	12.17	
관리용역비	▶ 7월~9월 승강기 관리용역비 납부 ▶ 10월~12월 연구소 승강기안전관리·청사보안·전화 시설보수·전기안전관리·폐기물 수거관리 ▶ 2024년도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정보시스템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12월) 등 유사 집행내역 32건	7.31/8.28/ 9.26 10.29/11.26 /12.20 12.23	50,853
시설장비유지비	▶ 기간제근로자 휴게실 확장 공사 ▶ 공장동 내부 화장실 타일 및 지붕 누수에 대한 보수	6.26 11.14	22,025
일반수용비 (수당, 자문)	▶ 책임운영기관 성과지표 개선 전문가 자문 ▶ 국립산림과학원 브랜드 제고를 위한 홍보워크숍 전문가 강연 수당 ▶ 국립산림과학원 브랜딩 강화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 수당 ▶ 2024년 제1회 부·과장 워크숍 초청 특강 수당 ▶ 책임운영기관 제도 이해를 위한 전문가 특강 자문 ▶ 2024년 책임운영기관 평가대응을 위한 워크숍 전문가 자문 ▶ 전직원 워크숍 외부강사 수당 지급 ▶ 2024년 제2회 부·과장 워크숍 특강 등 유사 집행내역 30건	3.22/4.4 4.9 5.16 8.19 9.26 10.14 12.20 12.20	7,230
일반수용비 (소모성 물품 구입)	▶ 산불 연구과 부서안내판 제작설치 ▶ 국립산림과학원 브랜드 제고를 위한 워크숍 현수막 ▶ 79회 식목일 기념 행사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성과 홍보 판넬 ▶ 산림과학원 미래부 연구환경조성을 위한 안내판 ▶ 책임운영기관 워크숍 현수막 ▶ 국립산림과학원 우수 연구성과 홍보물 제작	1.31 3.22 4.12 8.19 9.12 12.23	13,881
합 계			295,589

※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한국임업진흥원 지원: 신청사 설립 관련 소송 및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한국임업진흥원은 신청사 설립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 공모 관련 소송 등으로 인하여 2024년도 및 2025년도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2026년도 사업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업 계획의 불확실성 해소와 예산 집행 정상화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임업진흥원 지원 사업은 산림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와 임산물의 생산·유통·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산림소득을 증대하고 산업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임업진흥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 285억 6,600만원을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전액을 한국임업진흥원에 교부하였음¹³⁾.

【 2024년도 한국임업진흥원 지원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한국임업진흥원 지원	28,566	-	-	28,566	28,566	-	-	36,768

13)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한국임업진흥원 지원(1542-300)

나) 검토의견

□ 한국임업진흥원¹⁴⁾은 2021년 지방(대전) 이전이 결정되면서 동
사업 예산으로 ‘신청사 설립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4년의 경우 민간자본보조(320-07목) 예산으로 설계비 10억
1,1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이월액 7억 1,900만원을 고려한
교부현액 17억 3,000만원 중 8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51.8%
인 8억 9,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5년의 경우에도 8월 현재 교부현액 103억 6,000만원 중

14) 한국임업진흥원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타공
공기관으로, 한국임업진흥원은 ①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 생산·유통 정보에 관한 지원, ② 특별
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 ③ 품질인증, ④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지원 등의 사업
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관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산림청으로부터 출연·보조금으로 지원받는 수지차 보전기관에 해당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① 산림청장은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 생산 유통·정보 지원 등을 통한 산림소득 증대 및 산업
화 촉진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임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① 한국임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의 생산·유통 정보에 관한 지원

3.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및 제18조의7의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

3의2. 품질인증

4.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지원

5. 임업연구 성과의 기술 사업화 촉진 및 기술이전 지원

6. 산림자원 및 입지 조사 설계·평가

6의2.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6의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림탄
소상쇄제도의 운영·관리 및 산림분야 탄소배출권 확보사업

7. 임업·산촌 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8.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사업

9. 그 밖에 임업·산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
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공유 재산 및 물품을 한국임업진흥원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0.7%인 7,7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임.

【 연도별 신청사 설립 사업 예산 예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산립청		사업시행주체(임업진흥원)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3	830	830	830	-	830	111	719	-	13.4
2024	1,011	1,011	1,011	719	1,730	830	897	3	48.0
2025	9,463	9,463	9,463	897	10,360	77	-	-	0.7

※ 자료 : 한국임업진흥원

□ 당초에 한국임업진흥원은 건축기획, 설계, 토지매입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완료하고, 공사를 2025년부터 2026년에 완료하여 대전으로 이전('26. 12.)하는 것을 계획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였음.¹⁵⁾

□ 그러나 한국임업진흥원은 2023년도에 건축기획 착수 지연으로 인한 설계 입찰공고('23. 12.~'24. 3.) 지연 등으로 인하여 당초

15) 신청사 건립 사업 계획은 다음과 같음.

- ☐ (기간) '23년~'26년까지
 - 건축기획, 설계, 토지매입 : '23년~'24년 / 공사 : '25년~'26년
- ☐ (장소) 유성구 장대동 일원(교통·접근성 최우선 반영하여 선정)
 - 고속도로(호남), 지하철(1호선), BRT 신설('24년) 등 교통현황 양호
- ☐ (형태) 목조 건축을 통해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 적극 이행
- ☐ (이전 계획)
 - (1차 이전) 주무부처 소유 건물(대전시 유성구 계산동) 입주 방식을 통한 이전
 - (2차 이전) 신청사(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건립을 통한 이전

일정이 지연된 가운데,

2024년 설계 공모에 미당선된 업체에서 ‘당선자 결정 무효 등 청구의 소’를 제기(’24. 7. 8.)하여 한국임업진흥원장이 일부 패소(’25. 3. 20.)하고, ‘설계 용역 등 기타 일체의 후속절차 이행 금지’ 가처분이 인용(’25. 4. 8.)되면서,

2025년 8월 현재 동 설계 계약은 진행률 84% 수준에서 후속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며,¹⁶⁾ 한국임업진흥원은 서울고등법원에 본안에 대한 항소(’25. 4. 7.) 및 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25. 5. 8.)를 제기한 상황으로, 2025년도에도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재판부에 변론기일 지정을 별도로 신청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9월까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심을 승소하여 연내에 설계용역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나,

소송의 특성상 원고의 소극적 대응이나 재판부의 사건 적체 정도¹⁷⁾ 등의 외부적 요인이 존재하며, 항소심을 패소하는 경우에

16) 최종 패소로 확정될 경우 기존 용역의 성과품 활용은 불가하며 원칙적으로 설계공모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17) 행정소송사건 평균처리기간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제1심		항소심		상고심	
	판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기타
평균처리기간	339.4일	206.8일	258.8일	218.1일	129.1일	248.4일

※ 법원행정처, 「2024 사법연감」

는 상고심 진행을 위해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2025년도에 한국임업진흥원 신청사 설립이 조속히 재개되지 않으면, ① 2024년에 편성하여 2025년으로 이월한 ‘설계비’는 사 고이월에 해당¹⁸⁾하므로 2026년으로 재이월하는 것이 어렵고, ② 2025년도에 편성한 ‘건축비’의 경우 공사 관련 입찰공고 또는 지출원인행위 등이 없으면 이월이 어려워 불용될 수도 있는 상황임.

- 따라서 한국임업진흥원은 신청사 설립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 공모 관련 소송 등으로 인하여 2024년도 및 2025년도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2026년도 사업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업 계획의 불확실성 해소와 예산 집행 정상화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8)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5)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 자체수입 예산 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 산림복지진흥원은 최근 자체수입예산과 실적 간에 과도한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 시설별 운영 환경 등을 고려한 보다 정확한 추산을 통해 자체수입 예산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불필요한 국비의 초과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 사업은 국립산림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해 소외계층을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 501억 9,900만원을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501억 9,900만원을 전액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교부하였음¹⁹⁾.

【 2024년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	50,199	-	-	50,199	50,199	-	-	44,661

19)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1741-303)

나) 검토의견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 사업은 산림치유원, 숲체원 및 치유의숲 등 국립산림복지시설의 지속적 유지관리와 안정적 대국민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인건비와 경상경비 및 사업비 등 기관운영과 시설관리 소요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보조금 편성 시 시설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 예산을 반영·차감하는 수지차보전방식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있음.

□ 산림복지진흥원은 당초 2024년도 예산에 자체수입으로 74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수입이 95억 9,400만원으로 21억 6,300만원의 결산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전년도에도 22억 9,400만원의 결산 잉여금이 발생하는 등 최근 자체수입예산과 실적 간에 과도한 차액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음.

【산림복지진흥원 자체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자체수입 예산	6,232	6,232	7,431
자체수입 결산	6,617	8,526	9,594
결산 잉여금	385	2,294	2,163

※ 자료 : 산림청

□ 산림청은 자체수입 산출근거로 기존시설의 경우 시설 규모별 최근 3~5년간 결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고,²⁰⁾ 신규시설의 경우 운영 중인 동일 유형 시설 예산액의 25%를 적용하여 차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산림복지진흥원의 운영시설별 가동기간 및 가동률을 살펴보면,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이용금지 조치로 수혜인원이 일시감소하여 시설별 가동률이 1.9%~32.7%에 불과하고, 2023년 11월부터는 시설정비 및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월 1회 휴관일을 지정하여 가동기간이 감소하였음.

또한, 2025년 2월부터는 「산림복지시설 이용 지침」 개정으로 면적기준 및 수용인원이 변경되는 등 매년 시설 운영 환경과 기준의 변화로 인해 단순히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한 자체수입 산출은 정확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더욱이, 신규시설의 경우 운영시점에 따른 가동기간의 고려 없이 동일 유형 시설 예산의 25%를 일괄 적용하고 있는 것도 자체 수입 예산과 실적 간에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²¹⁾ 보다

20) 코로나19 기간인 '20년과 '21년은 실적 산정 시 제외('24년의 경우, '22년 평균실적 적용)

21) 산림청은 신규 산림복지시설의 '25년 요구금액은 시설 규모별 2년차 실적 평균을 적용[예: 신규 진안 산림치유원의 경우, 기존 영주 산림치유원의 2년차('17년) 실적의 70%를 적용하여 예산 증액 반영 455('24)→938('25)백만원]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각 시설별 방문 및 교육 인원, 가동기간, 가동률, 지역 상황 등의 운영 환경을 고려한 정확한 추산 없이 타 지역 유사 시설의 과거 평균 실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자체수입 예산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²²⁾에 따르면 산림복지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산림복지진흥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림복지진흥원은 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그 잉여금을 다시 해당 시설 운영 등의 사업비로 집행함으로써 사실상 다음 해의 예산이 증가하는 효과로 나타나고, 이는 해당 금액만큼 국비가 과다 지원되었음을 의미하게 됨.

【결산 잉여금 사용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이익금	사용내역
2022년	385	· '23년 예산에 편성하여 활용 - 산림복지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청소용역비 등
2023년	2,294	· '24년 예산에 편성하여 활용 - 시설안전관리를 위한 상황실 조성 및 시설 재해예방사업(315) - 산림복지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청소용역비 등(1,951) -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수준 진단 및 소프트웨어 갱신 등(28)
2024년	2,163	· '25년 예산에 편성하여 활용 - 산림복지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침구류 등(1,932) - 정보화 관련 공공데이터 및 보안평가 대응 등(204)

※ 자료 : 산림청

적을 반영한 산출은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2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6조(예산과 결산) ④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이익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진흥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따라서 산림복지진흥원은 최근 자체수입예산과 실적 간에 과도한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 시설별 운영 환경 등을 고려한 보다 정확한 추산을 통해 자체수입 예산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불필요한 국비의 초과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6) 산림헬기 도입·운영: 사업기간 변경 및 타 사업 전용 최소화 필요

- 산림헬기 도입·교체 사업은 산림헬기 도입에 착수한 후 납품까지 3년 이상이 소요됨에도 사업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3차년도 예산의 일부가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산림청은 동 내역사업의 사업기간을 4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산림청은 산불의 신속한 진화 및 초동 대응을 위한 산림헬기 도입·교체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예산을 타 사업으로 전용하는 집행방식은 가급적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산림헬기 도입·운영 사업은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을 위하여 산림헬기를 도입 및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 1,123억 4,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및 전용 등을 고려한 예산 현액 1,010억 3,900만원 중 941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54억 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4억 7,400만원을 불용하였음²³⁾.

【 2024년도 산림헬기 도입·운영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산림헬기 도입·운영	112,344	5,740	2,766 △19,811	101,039	94,158	5,407	1,474	93,858
-산림헬기 도입·교체	72,500	-	△15,160	57,340	52,838	4,502	-	52,500

23)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산림헬기 도입·운영(2333-300)

나) 검토의견

(1) 실제 소요기간을 고려한 사업기간 변경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산림헬기 도입·교체’는 산불 조기진화 및 산림재난 모니터링 등 효율적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헬기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대형헬기 3대(1년차, 2년차, 3년차 각 1대) 및 중형헬기 3대(3년차 2대, 1년차 1대) 도입을 위하여 72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151억 6,000만원²⁴⁾을 타 사업으로 전용하고 528억 3,800만원을 집행(72.9%)하였으며 45억 200만원을 이월하였음.

【 2024년도 산림헬기 도입·교체 내역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편성 근거	집행액	집행 내역	집행률
합 계	72,500		52,838		72.9
대형(3년차)	27,500	1대×55,000백만원×50%	11,838	1대×11,838백만원	43.0
대형(2년차)	22,000	1대×55,000백만원×40%	22,000	1대×22,000백만원	100.0
대형(1년차)	5,500	1대×55,000백만원×10%	2,750	1대×2,750백만원	50.0
중형(3년차)	15,000	2대×25,000백만원×30%	15,000	2대×7,500백만원	100.0
중형(1년차)	2,500	1대×25,000백만원×10%	1,250	1대×1,250백만원	50.0

※ 자료: 산림청

24) 산림재해대책비(2331-300) 사업으로 151억 6,000만원을 전용하였음

□ 2024년도 예산 중 일부 예산이 미집행된 것은 동 내역사업의 사업기간 설정과 실제 소요기간 간의 괴리 때문으로,

산림청은 산림헬기 1대당 사업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²⁵⁾, 실제로는 산림헬기 계약 체결까지 6개월~1년이 소요되고 이후 납품까지 3년 이상이 걸려, 3년 내에 예산 전액을 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임.

【 산림헬기 도입·교체 사업 추진 일정 】

연차	구분	내용
1차년도 (연부율 30%)	1월	예산배정 및 항공기 도입사업 TF 구성
	2월	입찰 제안요청서 작성 및 주요장비도입심의위원회 개최(자체계약 시 일상감사 요청)
	3월	사전 규격공고(5일) 및 규격서 재검토(필요시) * 업체의 규격 수정요청사항 있을 시 규격공고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4월	입찰공고(40일)
	5월	제안서 기술 및 가격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후 낙찰자 선정(협상기간 15일)
	6월	계약체결(계약후 납품까지 만 3년 소요) 및 신용장 개설
2차·3차년도 (연부율 30%)	3·9월	중간공정 검사
4차년도 (연부율 10%, 이월)	5~6월	최종 인수검사
	6월	수입부가세 지급

※ 자료: 산림청

25) 2024년 기준 대형 및 중형 산림헬기의 연도별 자산취득비 연부율은 1차년도 10%, 2차년도 40%, 3차년도 50%이고, 2025년도에는 각각 30%, 30%, 40%로 변경되었음.

【 연도별 산림헬기 도입시 자산취득비 연부율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대형 산림헬기	1:4:5	3:4:3	1:4:5	3:3:4
중형 산림헬기	1:4:5	-	1:4:5	3:3:4

※ 자료: 산림청

□ 예컨대, 2020년 이후 현재까지 도입된 대형 산림헬기 4대에 대한 계약 및 예결산 현황을 보면, 산림헬기 계약취소 통보 사례²⁶⁾를 제외하면 대형 산림헬기 구매 계약의 계약기간은 통상 3년이며, 이에 따라 산림청은 3차년도에 예산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4차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음.

【 2020년도 이후 도입된 대형 산림헬기 계약 및 예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A	B	C	D
기종	S-64E	M234	M234SP	M234SP
계약대수	1대	1대	1대	1대
계약일	'19. 12. 12.	'22. 12. 16.	'24.12.19.	'24.12.19.
계약기간	3년	3년	2년*	3년
납품일	'22. 12. 3.	'25. 12. 28.	'26.11.30.	'27.12.24.
예산편성연도	'19년~'21년	'22년~'24년	'23년~'25년	'24년~'26년
1차년도	8,100	5,500	16,500	5,500
2차년도	10,800	22,000	22,000	22,000
3차년도	8,100	27,500	7,700	27,500
합 계	27,000	55,000	46,200	55,000
예산집행연도	'19년~'22년	'22년~'25년	'23년~'26년	'24년~'27년
1차년도	8,100	5,500	16,500	2,750
2차년도	10,692	22,000	22,000	22,000
3차년도	5,010	11,838	2,868	(예정)27,500
4차년도	3,090	(예정)4,502	(예정)4,832	
합 계	26,892	(예정)43,840	(예정)46,200	(예정)52,250

※ 주: 납품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 실제 계약기간과 납품일 기준으로 작성, 납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과 납품일을 기준으로 작성

※ 주: 산림헬기C의 경우 기존 제조사와 계약취소 후 다른 제조사에서 既 제작 중인 대형헬기를 계약 체결하게 되면서 최종 계약의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된 것임

※ 자료: 산림청

26) 산림헬기C의 경우 당초 2023년도 예산 편성시 3개년도에 걸쳐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4개년도에 걸쳐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2024년 7월 8일 에릭슨사로부터 계약취소 통보를 받게 되면서 2024년 12월 19일 다른 제조사인 콜럼비아사에서 既 제작 중인 대형헬기를 계약 체결하게 되면서 최종 계약의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된 것임

□ 이러한 구조는 사실상 3차년도 예산의 일부에 대한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며, 이는 「국가재정법」 제3조²⁷⁾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종합하면, 동 내역사업은 산림헬기 도입에 착수한 후 납품까지 4년이 소요됨에도 사업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3차년도 예산의 일부가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산림청은 동 내역사업의 사업기간을 4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7)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2) 산림헬기 도입·교체 사업 예산의 타 사업 전용 최소화 필요

□ 산림청은 산림헬기 도입·교체 사업을 위하여 2024년도에 72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21%에 해당하는 151억 6,000만원을 산림재해대책비(2331-300)로 전용('24.5)하였으며, 전용 사유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세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긴급방제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은 국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키는 산불의 조기진화에 필요한 핵심 진화장비인 산림헬기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산불이 일상화, 대형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산불피해 면적: 2010년대→2020년대 11배 급증)함에 따라,²⁸⁾ 신속한 진화 및 초동 대응을 위해 산림청은 13개 산림항공본부 및 관리소에 산불진화헬기(50대)를 배치·운영 중에 있으나,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산불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산불진화 헬기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²⁹⁾

또한, 산림청 보유 헬기(50대) 중 기령이 20년을 초과한 헬기

28) 연평균 산불피해(대형산불 건수) : ('10년~'19년) 857ha(1.3건) → ('20년~'24년) 8,368ha(6건)

- '23.4.2. 전국에 산불 35건, 4.3. 대형산불 5건 동시다발 발생

- '25.3.22.~30(9일간) 경북·경남·울산 지역 초대형 산불발생으로 103,876ha 피해

[산불 규모 역대 1위, 인명피해 183명(사망 27명, 부상 156명), 재산피해 1조 818억원]

29) 2023 봄철 전국동시다발 산불백서(산림청, p.235)

비율은 44%(22대)이고, 30년을 초과한 헬기의 비율은 24%(12대)를 차지하고 있어 노후화 비중도 높은 상황임.

【 산림청 보유 산림헬기 현황 】

(단위 : 대)

구분	계	S-64	KA-32	KUH-1	AS350	Bell206
보유	50	7	29	3	4	7
20년 초과	22	1	20	-	1	-
30년 초과	12	-	3	-	2	7

※ 자료 : 산림청

□ 특히, 최근 국회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발생('25.3)을 계기로 추가경정예산안('25.5)을 통해 산림헬기(대형 3대, 중형 3대) 추가 도입 예산을 반영한 바 있음.

□ 이처럼 산림헬기는 도입에 오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고, 국회도 추경을 통해 추가 도입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타 사업을 위하여 상당 규모의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편성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산림청은 산불의 신속한 진화 및 초동 대응을 위한 산림헬기 도입·교체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예산을 타 사업으로 전용하는 집행방식은 가급적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2024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전입금 6,388억 800만원, 경상이전수입 2,550억 9,400만원 등 9,866억 9,8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실제 징수결정액은 관유물매각대, 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1,126억 6,800만원이 감소한 9,989억 3,400만원이 되었음.

□ 징수결정액 9,989억 3,400만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 6,388억 800만원, 법정부담금 등 경상이전수입이 2,287억 1,800만원,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254억 200만원 등으로 총 9,269억 300만원을 수납하였음.

□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 720억 3,100만원의 주요 원인은 납기미도래가 403억 8,700만원,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이 125억 3,200만원, 관계기관 예산부족이 54억 6,400만원, 징수유예 등이 1억 400만원 등임.

【 2024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A)	징 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 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증 감	
						E=C-A	E/A
합 계	986,698	998,934	926,903	-	72,031	△59,795	△6.1
○ 재 산 수 입	1,416	2,270	2,083	-	187	667	47.1
- 관유물대여료	-	1	1	-	-	1	순증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416	2,269	2,082	-	187	666	47.0
○ 경상이전수입	255,094	299,622	228,718	-	70,904	△26,376	△10.3
-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12	6	6	-	-	△6	△50.0
- 변상금및위약금	126	174	137	-	37	11	8.7
- 가 산 금	2	-	-	-	-	△2	순감
- 기타경상이전수입	254,954	299,442	228,575	-	7,867	△26,379	△10.3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77	699	694	-	5	617	801.3
- 잡 수 입	77	699	694	-	5	617	801.3
○ 관유물매각대	25,707	17,222	16,287	-	935	△9,420	△36.6
- 고정자산매각대	-	9	9	-	-	9	순증
-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25,707	17,213	16,278	-	935	△9,429	△36.7
○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55,836	25,402	25,402	-	-	△30,434	△54.5
- 융자원금회수	55,836	25,402	25,402	-	-	△30,434	△54.5
○ 전년도이월금	-	9,295	9,295	-	-	9,295	순증
- 전년도이월금	-	9,295	9,295	-	-	9,295	순증
○ 세계잉여금	9,760	5,616	5,616	-	-	△4,144	△42.5
- 세계잉여금이입액	9,760	5,616	5,616	-	-	△4,144	△42.5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638,808	638,808	638,808	-	-	-	-
- 전 입 금	638,808	638,808	638,808	-	-	-	-

※ 자료: 산림청

2) 세출결산

- 2024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예산액은 당초 9,866억 9,8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92억 9,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9,959억 9,300만원으로 증가함.
- 예산현액 중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에 5,271억 2,700만원,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관리에 1,138억 2,600만원, 임산물수출촉진 등 국제산림협력 63억 400만원 등에 92.2%인 9,183억 7,000만원이 지출되었음.
- 다음연도 이월액 466억 9,200만원은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421억 2,800만원, 산림재난관리 28억 3,800만원 등이며, 불용액 309억 3,100만원은 각 비목별 집행잔액 등임.

【 2024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 이용				
[합 계]	986,698	9,295	-	87 △87	995,993	918,370	46,692	30,931
○ 국제산림협력 (1300프로그램)	7,419	-	-	-	7,419	6,304	1,096	19
- 임산물수출촉진	7,419	-	-	-	7,419	6,304	1,096	19
○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1500프로그램)	569,954	9,295	-	87 △87	579,249	527,127	42,128	9,994
- 산림자원 육성·관리	368,891	8,244	-	-	377,135	355,588	16,025	5,522
- 목재 및 임산물 활용	105,287	-	-	58 △58	105,287	102,126	2,146	1,015
- 임업정책자금 지원	77,003	-	-	29 △29	77,003	53,418	20,810	2,775
- 산림경영 경쟁력 강화	14,024	1,051	-	-	15,075	11,246	3,147	682
- 임업기술연구개발	4,749	-	-	-	4,749	4,749	-	-
○ 산림재난관리 (2300프로그램)	117,357	-	-	-	117,357	113,826	2,838	693
- 산림병해충 예방 및 대응	117,357	-	-	-	117,357	113,826	2,838	693
○ 산림행정지원 (7000프로그램)	5,700	-	-	-	5,700	4,919	630	151
- 임업통계조사	5,700	-	-	-	5,700	4,919	630	151
○ 회계간거래 (8000프로그램)	286,268	-	-	-	286,268	266,194	-	20,074
- 회계간 전출	286,268	-	-	-	286,268	266,194	-	20,074

※ 자료: 산림청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조림: K-포레스트관건립 사업의 연례적인 집행부진 문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산림청은 K-포레스트관건립 추진 과정에서 설계 및 공사 지연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연내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여 연례적인 이월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 추진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조림 사업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나무를 심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 1,172억 8,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82억 4,400만원을 고려한 예산현액 1,255억 2,500만원을 편성하여 1,159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81억 4,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4억 6,800만원을 불용하였음³⁰⁾.

【 2024년도 조림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조림	117,281	8,244	512 △512	125,525	115,911	8,146	1,468	107,722
-K-포레스트관건립	4,200	8,244	-	12,444	6,332	6,111	-	4,963

30)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조림(1534-300)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K-포레스트관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213억 9,900만원³¹⁾으로 국립세종수목원 내에 연면적 3,841.23m²의 지하 1층 및 지상 2층 규모로 VR·AR을 활용한 첨단 산림사업 체험 및 홍보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2021년도에 시작하여 2023년에 완료할 계획이었음.³²⁾

□ 그러나 사업 첫 해인 2021년부터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의 지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체결이 약 1년 가량 지연됨에 따라 사업종료 시점도 2023년에서 2024년까지로 1년 연장되었다가,

2023년에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으로 신규 등록('23. 5.)된 이후, 2023년 8월에 사업종료 시점을 2025년으로 연장한 뒤, 2025년 6월에 사업종료 시점을 2026년으로 추가적으로 연장하였음.

이에 따라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건립 사업비 집행률은 각각 50.6%, 26.4%, 28.4%로 낮게 나타났으며, 2023년의 경우 예산현액의 상당 부분(67.3%)을 다음연도인 2024년으로 이월하였음.

31) 설계비 8억 2,700만원, 공사비 183억 5,500만원, 감리비 21억 5,500만원, 시설부대비 6,200만원

32) K-포레스트관은 당초 ‘산림녹화기념관’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였다가, ‘K-포레스트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현재는 이를 ‘국토녹화 50주년 기념관’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K-포레스트관건립 사업 ‘설계’ 계획 및 집행일정 비교 】

구분	당초 계획	집행 일정
공모, 부지선정	기 확정(국립 세종수목원 내)	
설계착수이전 사전절차	'21.3.~12.	'21.3.~12.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1년	'21.12~'22.12.
설계 적정성, 설계 경제성(VE),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22.10.~12.

※ 자료: 산림청

【 2021년도~2023년도 K-포레스트관건립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K-포레스트관건립	943	477	2,577	680	9,977	2,265	12,243	2,836	8,244	1,162
(집행률)	50.6		26.4		28.4					
- 실시설계비	833	457	-	370	-	-	-	-	-	-
- 공사비	-	-	1,850	-	9,250	1,758	11,009	2,054	7,792	1,162
- 감리비	90	-	707	290	707	507	1,214	762	452	-
- 시설부대비	20	20	20	20	20	-	20	20	-	-

※ 자료: 산림청

□ 이러한 사업 지연은 2024년도에도 심화되었는데, 공사 착수 후 4개월 만에 터파기 작업 중 지하수가 용출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되어 6개월간 공사가 중지됨에 따라,

2024년도 예산현액 124억 4,400만원 중 63억 3,200만원(50.9%)을 집행하고 61억 1,100만원을 이월하였음.

【 K-포레스트관건립 사업 ‘공사’ 당초 계획 및 현재 계획 비교 】

구분	당초 계획	실행 현황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21~'23	'22~'25
공사계약 입찰~낙찰자 결정, 계약	'22	'23.2~'23.5.
공사 착수~완료	'22~'23	'23.5~'25.11
터파기 작업 중 지하수 용출 및 동절기		6개월 공사중지 ('23.9~'24.2)
경골목구조 내화인증		3개월 공사중지 ('25.1~'25.3)

※ 자료: 산림청

【 2024년도 K-포레스트관건립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K-포레스트관건립	4,200	8,244	12,444	6,332	6,111	-	4,963
- 공사비	4,200	7,792	11,992	6,332	5,659	-	4,309
- 감리비	-	452	452	-	452	-	652
- 시설부대비	-	-	-	-	-	-	2

※ 자료: 산림청

□ 산림청은 이에 대하여 지하수 용출로 인하여 설계변경 등의 과정이 불가피하였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8조³³⁾에

3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따라 예산의 이월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산림청이 공사 중지를 인지한 것은 2023년 9월로, 6개월 간의 공사 중지로 인하여 계약 당시 예상하였던 2025년 1월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기준 공사비 183억 5,500만원 중 76.5%에 해당하는 140억 4,600만원을 2024년까지 집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보임.

특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8조에 따라 예산의 이월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³⁴⁾의 예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2024년도 예산 편성시에 이미 대규모 이월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³⁵⁾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4)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35) 한편, 동 공사는 최근 건축재료 변경에 따른 내화인증 실시로 인하여 약 3개월(2025년 1월~2025년 3월)의 공사중지가 추가로 발생하여서 2025년 8월이 아닌 2025년 11월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임.

□ 종합하면, 산림청은 동 내역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 및 공사 지연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연내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여 연례적인 이월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 추진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목재이용증진,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이용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예산의 부적정한 통합 집행행위 주의 필요

- 산림청은 목재제품 통계분석 사업과 목재이용실태조사 사업 예산을 「목재이용실태조사 보고서」 발간에 임의로 통합하여 사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바 주의가 필요하며, 2026년도부터는 목재제품 통계분석 사업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목재이용증진 사업은 국민인식 증진 및 공공분야 국산목재 수요창출을 통한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증대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고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이행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 88억 2,600만원을 편성하여 74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5,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1,700만원을 불용하였음³⁶⁾.

□ 목재제품 품질관리 사업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품질기준 관리 및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사법경찰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 11억 4,600만원을 편성하여 11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3,100만원을 불용하였음³⁷⁾.

36)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목재이용증진(1535-304)

37)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목재제품 품질관리(1540-301)

【 2024년도 목재이용증진 사업 및 목재제품 품질관리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목재이용증진	8,826	-	36 △36	8,826	7,451	1,158	217	9,826
-목재이용 활성화	802	-	-	1,250	1,250	-	-	1,250
목재제품 품질관리	1,146	-	50 △50	1,146	1,115	-	31	1,146
-목재제품 유통관리 기반구축	647	-	-	647	630	-	177	647

나) 검토의견

□ 목재이용증진 사업의 내역사업인 ‘목재이용 활성화’ 사업은 목재문화·교육을 확산하고 공공분야 국산목재 수요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목재제품 통계분석’을 위한 예산 4,600만원을 편성하여 3,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목재제품 품질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인 ‘목재제품 유통관리 기반구축’ 사업은 목재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목재제품 품질관리 운영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목재이용실태조사’를 위한 예산 3억 2,100만원을 편성하여 3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음.

【 목재이용실태조사 및 목재제품 통계분석 예·결산 현황 】

구 분	예산액	집행액
목재제품 통계분석	46백만원	37백만원
	19개 × 2.425백만원	19개 × 1.95백만원
목재이용실태조사	321백만원	311백만원
	21개 품목 × 15.29백만원	21개 품목 × 14.81백만원

※ 자료 : 산림청

□ 목재제품 통계분석 사업과 목재이용실태조사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서 서로 다른 회계 및 세부사업에 분리되어 편성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산림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목재이용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함께 집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목재이용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예산은 2021년 1억 9,300만원에서 2022년 2억 3,900만원, 2023년 3억 6,700만원으로 증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연도별 「목재이용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목재제품 통계분석	-	46	46	46	46
목재이용실태조사	193	193	321	321	321
합 계	193	239	367	367	367

※ 자료 : 산림청

□ 이와 같은 집행행태는 2022년에 목재제품 통계분석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면서부터 현재까지 매년 지속되고 있는데, 2021년에 발간한 「2020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보고서」와 2022년에 발간한 「2021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보고서」는 구성상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림청은 목재제품 통계분석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면서, 이를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타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는 수단으로 우회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실제로 각 연도별 「목재이용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예산은 목재이용실태조사 및 목재제품 통계분석 사업의 각 예산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단계별로 구분하여 편성되어 있는데,

【 「목재이용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예산 세부 산출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내역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합 계		193,000	239,000	367,000
① 통계조사 기획		44.0	61.3	62.8
가. 조사설계	조사표 설계	41,090	58,555	60,819
	조사준비 회의	2,939	2,800	2,800
② 통계조사 준비		36.2	48.7	82.5
가. 통계조사준비	조사원 교육	3,780	4,534	8,354
나. 조사표, 조사지침서 및 조사용품 마련	조사서류 인쇄비	9,801	10,540	18,423
	조사기반 준비	22,615	33,711	55,747

구 분		산출내역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③ 자료수집		98.9	112.1	203.1
가. 현장조사	현장조사	83,432	100,968	182,657
나. 조사표 내검 및 입력	내검 및 입력	15,444	11,162	17,470
④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13.9	16.3	18.6
가. 결과보고서 발간	보고서 발간 등	9,600	9,400	9,400
나. 자료처리 및 통계 데이터베이스 관리	통계 DB 관리	4,300	6,983	9,281

※ 자료 : 산림청

동 발간 예산 관련 계약³⁸⁾의 상대방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각 단계별 예산을 임의로 분리하여 완료계를 제출하는 등 비
정상적인 계약행태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산림청은 연도별로 ① 조사대상 품목 추가³⁹⁾, ②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증가로 인한 조사모집단의 증가, ③ 통계
조사대상 확대에 따른 통계조사원 확대⁴⁰⁾ 등으로 인하여 목재
이용실태조사 사업 예산만으로는 동 보고서 발간이 어려웠다
는 입장임.

□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기존 사
업의 예산을 변경하는 방식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바,

38) 2024년도 사업의 경우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2개의 계약('2023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용역' 계약, '2023년 기준 목재제품 통계분석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

39) ('21) 18개 → ('22) 19개 → ('23~) 21개 품목

40) ('21) 55명 → ('22) 65명 → ('23~) 114명

신규사업 예산을 임의로 통합하여 집행하는 것은 ① 신규사업을 기존 사업과 별도로 구분하여 편성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② 「목재이용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예산 관련 국회의 통제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산림청은 목재제품 통계분석 사업과 목재이용실태조사 사업 예산을 「목재이용실태조사 보고서」 발간에 임의로 통합하여 사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바 주의가 필요하며, 2026년도부터는 목재제품 통계분석 사업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3) 임업기능인양성: 임업기계장비의 낮은 활용률을 제고 필요 등

- 최근 3년간 임업기계장비 활용률은 평균 46.5%에 머무르고 있어 동 사업의 성과가 부진한바, 산림청은 임업인에 대한 임업기계장비 홍보와 정기적인 운용인력 양성 교육 등을 통해 임업기계장비의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현장 수요와 활용빈도,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상시운용 인력 현황 등을 반영한 지역별 맞춤형 구입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음.
- 국유림임업기계장비보급 사업 중 고성능 임업기계장비는 계약에서 도입까지 2년이 소요됨에도 사업기간을 단년도로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예산의 일부가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산림청은 동 사업의 사업기간을 2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임업기능인양성 사업은 임업기능인력의 노령화에 따라 신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인 산림사업을 위해 임업기계장비를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150억 7,500만원 중 112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31억 4,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억 8,2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⁴¹⁾.

41)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임업기능인양성(1540-301)

【 2024년도 임업기능인양성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임업기능인양성	14,024	1,051	181 △181	15,075	11,247	3,147	682	14,024
- 국유림임업기계 장비보급	7,188	1,051	17 △17	8,239	5,370	2,414	455	7,188
- 임업기계지원센터 지원	181	-	-	181	181	-	-	181

나) 검토의견

(1) 임업기계장비의 낮은 활용률 제고 필요

□ 내역사업인 ‘국유림임업기계장비보급’ 및 ‘임업기계지원센터 지원’은 국유림(소속기관)과 임업기계지원센터(산림조합중앙회)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 지역실정에 맞는 임업기계장비⁴²⁾를 보급하여 임업기계화 촉진 및 임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국유림임업기계장비보급’은 2024년 예산현액 82억 3,900만원 중 53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24억 1,400만원을 다음연도로

4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의4. “임업기계장비”란 임업분야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및 도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월하였으며, 4억 5,5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임업기계지원센터 지원’(산림조합중앙회 민간보조)은 2024년 예산현액 1억 8,1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 내역사업인 ‘국유림임업기계장비보급’ 및 ‘임업기계지원센터 지원’의 성과지표는 임업기계장비의 활용률(%)로 설정되어 있는데, 최근 4년간 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임업기계장비 활용률은 2021년 51.2%에서 2022년 44.5%로 감소한 후 2023년 46.6%, 2024년 48.3%에 머물러 있음.

【최근 4년간 임업기계장비보급 사업의 성과지표 및 달성도⁴³⁾】

성과 지표	구분	'21	'22	'23	'24	20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임업기계 장비 활용률 (%)	목표	42.0	44.1	46.2	48.3	최근 4개년 증가 추세 (매년 1% 내외)를 반영한 48.3% 목표 설정	(Σ장비 운영일수/Σ기준 작업일수) ×100% / 기계장비대수
	실적	51.2	44.5	46.6	48.3		
	달성도	121.9	100.9	100.9	100.0		

※ 자료 : 산림청

43) 참고로, 임업기계장비 활용률은 당초 국유림임업기계장비 보급, 임업기계지원센터 지원 및 지자체 임업기계장비보급 사업의 활용률을 성과지표로 하였으나, 2025년부터 지자체 임업기계장비 보급 사업은 종료되었음.

□ 또한 내역사업별 임업기계장비의 사용일수 및 활용률을 살펴보면,

국유림의 경우 임업기계장비 1대당 사용일수는 2021년 51.3일
→ 2024년 36.6일로 감소하였고, 장비의 활용률은 2021년
36.0% → 2024년 50.5%로 다소 증가하였음.

반면, 임업기계지원센터(산림조합)의 경우 임업기계장비 1대당
사용일수는 2021년 40.0일 → 2024년 22.0일로 감소하였고, 장
비의 활용률도 2021년 42.0% → 2024년 32.9%로 하락하였음.

□ 이처럼 전반적으로 임업기계장비의 활용률이 저조하고, 대당
사용일수는 2021년 이후 매년 감소하여 2024년 기준 임업기계
장비의 활용빈도는 1대당 36.6일(1개월에 3일 정도 사용 수준)에
불과해 연중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임을 알 수 있음.

【최근 4년간 임업기계장비 보유 및 활용실적】

(단위 : 대, %)

내역사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유림	보유대수	936	980	927	949
	사용일수	53,912	48,635	34,694	34,765
	대당 사용일수	51.3	43.0	37.4	36.6
	활용률	36.0	32.9	33.8	50.5
임업기계지원 센터 (산림조합)	보유대수	446	548	661	708
	사용일수	21,622	25,980	20,795	15,610
	대당 사용일수	40.0	39.5	31.5	22.0
	활용률	42.0	50.6	53.0	32.9

※ 자료 : 산림청

□ 이와 함께 재래식 임업기계 대비 높은 작업 경제성과 산업재해를 경감, 기계화를 통한 목재생산의 증대를 위하여 2021년부터 국유림관리소 등에 도입⁴⁴⁾되고 있는 고성능 임업기계장비⁴⁵⁾의 경우에도 2024년 기준 평균 가동률은 23.8%에 불과한 실정임.

【연도별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활용 현황⁴⁶⁾】

편성 연도	기관명	장비종류	2021		2022				2023				2024			
			작업 일수 (일)	작업 량 (㎡)	기준 일수 (일)	작업 일수 (일)	가동 률 (%)	작업 량 (㎡)	기준 일수 (일)	작업 일수 (일)	가동 률 (%)	작업 량 (㎡)	기준 일수 (일)	작업 일수 (일)	가동 률 (%)	작업 량 (㎡)
2021	산림기술 경영연구소	하베스터	-	-	64	8	12.5	-	64	10	15.6	107	64	6	9.4	92
	산림기술 경영연구소	타워야더	-	-	64	36	56.3	103	64	7	10.9	-	64	28	43.8	180
	산림기술 경영연구소	포워더	-	-	64	36	56.3	-	64	21	32.8	389	64	10	15.6	-
	산림기술 경영연구소	고성능 목재파쇄기	-	-	64	5	7.8	-	64	16	25.0	-	64	3	4.7	-

44)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도입 현황】

연도	기관명	도입 장비	대수 (대)	금액 (백만원)
2021	산림기술경영연구소	하베스터, 포워더, 타워야더, 드림칩퍼, 구동트럭	6	2,657
2022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	스키더, 타워야드, 프로세서, 하베스터, 포워드	5	2,797
2023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멀처, 프로세서, 타워야더, 포워더, 하베스터	6	3,172
2024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하베스터, 포워더, 저장트레이일러, 멀처, 임내차	5	3,231

※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도입사업은 '21년부터 국가직접사업으로 추진

45) 고성능 임업기계는 차량계 임업기계를 중심으로 한 다공정 수확기계로, 임목수확의 단위작업 중 한 가지 이상을 하나의 공정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

- 하베스터(벌도조제기), 포워더(적재집재차량), 펠러번처(벌도기), 스키더(견인집재차량), 프로세서(조제기), 타워야더(부착형 집재기) 등

46) 산림청에 따르면, 평창국유림관리소는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수입 지연으로 '24년 하반기 도입되어 운영실적이 없으며, 기준일수(64일)는 국립산림과학원(산림기술경영연구소) 연구에 의해 숲가꾸기 사업 일수에서 기상상황, 휴일 등의 일수를 제외하여 결정한다는 설명임.

편성 연도	기관명	장비종류	2021		2022				2023				2024			
			작업 일수 (일)	작업 량 (㎡)	기준 일수 (일)	작업 일수 (일)	가동 률 (%)	작업 량 (㎡)	기준 일수 (일)	작업 일수 (일)	가동 률 (%)	작업 량 (㎡)	기준 일수 (일)	작업 일수 (일)	가동 률 (%)	작업 량 (㎡)
2022	홍천국유림 관리소	스키더			-	-	-	-	64	5	7.8	-	64	17	26.6	-
	홍천국유림 관리소	타워야더			-	-	-	-	64	7	10.9	-	64	12	18.8	-
	홍천국유림 관리소	프로세서			-	-	-	-	64	1	1.6	-	64	9	14.1	-
	홍천국유림 관리소	하베스터			-	-	-	-	64	9	14.1	-	64	14	21.9	-
	홍천국유림 관리소	포워더			-	-	-	-	64	7	10.9	-	64	38	59.4	180
2023	평창국유림 관리소	멀처						-	-	-	-	-	-	-	-	-
	평창국유림 관리소	프로세서						-	-	-	-	-	-	-	-	-
	평창국유림 관리소	타워야더						-	-	-	-	-	-	-	-	-
	평창국유림 관리소	포워더						-	-	-	-	-	-	-	-	-
	평창국유림 관리소	하베스터						-	-	-	-	-	-	-	-	-

※ 자료 : 산림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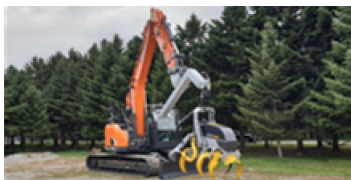
□ 산림청은 ‘국유림임업기계장비보급’ 및 ‘임업기계지원센터 지원’ 사업에서 임업기계장비의 활용률이 모두 부진하게 나타난 이유로 i) 현장 기계 활용의 대부분은 기계톱, 굴착기(우드그랩)⁴⁷⁾ 등 임업인들이 별도의 교육 없이 사용 가능한 장비로 한

47) 우드그랩(나무집게)

정되어 있고,

ii)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지원사업과 고성능 장비를 포함한 다양한 임업기계장비의 홍보 및 장비 활용 교육 등이 연계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고성능 임업기계장비의 경우 전문 운용인력의 부족으로 임업기계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아니한 데 따른 것으로 설명함.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운용 인력】

		
하베스터 (벌도, 가지제거, 조재)	포워더 (집재, 소운반, 상하차)	스키더 (집재, 소운반)
		
프로세서 (조재, 집적)	고성능 파쇄기 (목재 파쇄)	타워야더 (집재)
		
	멀처 (식물·수풀 파쇄)	

※ 자료 : 산림청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운용 인력】

기관명	근무형태	인원수(명)	보유장비(대)
산림기술경영연구소	공무직근로자	2	6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	산림주무관	1	5
	기간제근로자	2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기간제근로자	2	6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국유림영림단 ⁴⁸⁾	2	-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국유림영림단	7	-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산림주무관	1	5
	국유림영림단	1	
(사)한국원목생산협회,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민간인(임업인)	3	-
합 계		21	22

※ 자료 : 산림청

□ 산림청은 2024년에 임업인을 대상으로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활용 교육을 21일간(5월~6월 중, 3주, 7명) 실시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임업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중 정기적인 실습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음.

4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운영) 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임업기능인에게 국유림영림단(國有林營林團)을 조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조림 사업
2. 숲가꾸기 사업
3.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4. 산림용 종묘 생산 등에 관한 사업
5. 임목의 벌채·굴취 또는 이식 사업

- 산림 분야의 노동 인력 고령화와 근로자 수 감소로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고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안전하고 효율적인 산림사업을 위해서는 임업기계장비 활용여건을 조성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임.

- 따라서 산림청은 임업기계장비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임업인에 대한 임업기계장비 홍보와 정기적인 운용인력 양성 교육 등의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임업기계장비 구입 시 현장에서의 활용빈도, 임업인의 수요,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상시운용인력 현황 등을 반영하여 지역별 맞춤형 구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임.

(2)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도입의 실제 소요기간을 고려한 사업
기간 변경 필요

□ 내역사업인 ‘국유림임업기계장비보급’의 2024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예산액 71억 8,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 5,1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82억 3,900만원 중 24억 1,4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데, 다음연도 이월 규모는 예산액의 29.3%를 차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집행실적을 보더라도 집행 부진 및 이월 문제는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매년 예산액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다음연도 이월액 규모도 증가하여 2020년 2,300만원에서 2024년 24억 1,400만원으로 5년간 105배가 증가함.

【 최근 5년간 국유림임업기계장비 보급 집행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유림 임업기계 장비 보급	예산액(A)	2,389	4,889	4,889	5,577	7,188
	실집행액	2,364	4,473	4,378	4,452	4,319
	이월액(B) (B/A)	23 (1%)	372 (7.6%)	313 (6.4%)	1,051 (18.8%)	2,414 (29.3%)
	불용액	2	44	198	74	455

※ 자료 : 산림청

□ 다음연도 이월액 규모는 2023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월액 중 상당 규모는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도입에서 발생하고 있음.

【 연도별 국유림임업기계장비 보급 이월 내역⁴⁹⁾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유림임업기계장비보급	23	372	313	1,051	2,414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	-	-	1,051	1,227

※ 자료 : 산림청

□ 산림청은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도입 과정에서 대외 정세 불안정에 따른 기계장비 공급 차질과 계약 지연으로 인하여 다음연도 이월이 발생하였고,

2021년과 2022년 도입초기에는 장비를 외자구매하면서 신용장 개설을 통한 계약대금 지급방식으로 이월액이 없었으나, 2023년부터 대부분 장비를 내자구매로 전환하면서 신용장 이용이 불가하여 이월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임.⁵⁰⁾

49) 산림청은 국유림임업기계장비 보급 이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20년~’22년) 코로나19로 인한 제작기간 지연으로 공급차질

(’23년) 대외 정세 불안정으로 인한 기계장비 공급 차질 및 계약지연

(’24년_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이월 제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자금부족에 따른 이월

50) 산림청에 따르면, 도입초기에는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사업자가 부재하고 내자보다 저렴한 수수료와 조달청의 신용장을 이용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가능 등의 이유로 외자 구매를 추진하였으나, 2023년 이후 사업자 증가로 인해 국내 조달업체의 경쟁입찰이 가능해지고 조달청 구매협의 시 국내 조달업체가 있는 품목의 경우 외자를 지양하도록 함에 따라 내자 구매로 전환함(내자의 경우 신용장 이용이 불가하여 회계연도 예산 이월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수리, 활용 교육 등 사후서비스가 명확하게 보장되어 구매자 입장에서 부담 경감).

실제 2023년과 2024년에 내자로 도입된 모든 장비에서 다음 연도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4년도의 경우 도입 장비 중 저장트레일러 및 임내차 장비는 계약액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됨.

【 연도별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집행 내역 】

(단위 : 백만원)

편성연도	기관명	장비종류	조달구분	계약액	다음연도 이월
2024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하베스터	내자	1,279	379
		포워더	내자	1,065	213
		저상트레일러	내자	390	390
		멀처	내자	280	80
		임내차	내자	165	165
		합 계	-	3,179	1,227
2023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멀처	내자	219	69
		타워야더	내자	1,150	230
		포워더	내자	752	752
		하베스터	외자	1,051	-
		합 계	-	2,201	1,051
2022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	스키더	외자	529	0
		타워야더	외자	654	0
		프로세서	외자	141	0
		하베스터	외자	878	0
		포워더	외자	717	0
		합 계	-	2,919	0
2021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하베스터	외자	385	0
		타워야더	외자	441	0
		포워더	외자	707	0
		고성능목재파쇄기	외자	396	0
		합 계	-	2,202	0

※ 자료 : 산림청

※ 내자: 국내에서 조달되는 모든 것.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공급되는 물품, 용역, 임대차 등을 포함함.
외자: 외국에서 생산되거나 공급되는 물품, 용역 등을 의미. 외국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외화로 지불하여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함.

□ 이와 관련하여 2023년과 2024년의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도입 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도입 장비가 당해연도에 계약 및 선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장비 수령 및 잔금 지급은 다음 연도에 완료되고 있음.

【 2023·2024년도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도입 일정 】

편성연도	발주기관	장비종류	구분	일정
2024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하베스터	도입검토	'24. 1. 16.
			장비결정	'24. 5. 23.
			조달청 구매협의를	'24. 6. 28.
			입찰절차 추진	'24. 8. 7.
			계약	'24. 9. 23.
			선금(선금)	'24. 11. 01.
			수령	'25. 3. 27.
			잔금	'25. 4. 15.
		포워더	도입검토	'24. 1. 16.
			장비결정	'24. 5. 23.
			조달청 구매협의를	'24. 7. 30.
			입찰절차 추진	'24. 8. 8.
			계약	'24. 11. 6.
			선금(선금)	'24. 11. 13.
			수령	'25. 5. 25.
			잔금	'25. 6. 5.
		저상트레일러 51)	도입검토	'24. 1. 16.
			장비결정	'24. 5. 23.
			조달청 구매협의를	'24. 10. 24.
			입찰절차 추진	'24. 11. 8.
			계약	'24. 12. 19.
			선금(선금)	-
			수령	-
			잔금	-
		멀처	도입검토	'24. 1. 16.
			장비결정	'24. 5. 23.

편성연도	발주기관	장비종류	구분	일정
			조달청 구매협의를	'24. 8. 12.
			입찰절차 추진	'24. 8. 20.
			계약	'24. 10. 29.
			선급(선금)	'24. 11. 13.
			수령	'25. 4. 15.
			잔금	'25. 4. 18.
		임내차 ⁵²⁾	도입검토	'24. 1. 16.
			장비결정	'24. 5. 23.
			조달청 구매협의를	'24. 9. 11.
			입찰절차 추진	'24. 9. 27.
			계약	'24. 11. 29.
			선급(선금)	-
			수령	'24. 12. 27.
			잔금	'25. 2. 11.
2023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멀처	도입검토	'23. 3. 27.
			장비결정	'23. 8. 28.
			조달청 구매협의를	'23. 9. 7.
			입찰절차 추진	'23.10.13.~17.
			계약	'23. 10. 20.
			선급(선금)	'23. 10. 23.
			수령	'24. 6. 18.
			잔금	'24. 6. 18.
		타워야더	도입검토	'23. 10. 18.
			장비결정	'23. 11. 17.
			조달청 구매협의를	'23. 11. 21.
			입찰절차 추진	'23. 11. 28. ~'23. 12. 12.
			계약	'23. 12. 20.
			선급(선금)	'23. 12. 26.
			수령	'24. 12. 6.
			잔금	'24. 12. 30.
		포워더	도입검토	'23. 3. 27.
			장비결정	'23. 11. 17.
			조달청 구매협의를	'23. 11. 22.
			입찰절차 추진	'23. 11. 28. ~'23. 12. 12.

편성연도	발주기관	장비종류	구분	일정
			계약	'23. 12. 22.
			선금(선금)	'24. 2. 20.
			수령	'24. 10. 24.
			잔금	'24. 10. 24.
		하베스터	도입검토	'23. 3. 27.
			장비결정	'23. 10. 9.
			조달청 구매협약	'23. 11. 6.
			입찰절차 추진	'23. 11. 19.
			계약	'23. 12. 26.
			신용장 입금	'23. 12. 29.
			수령	'24. 11. 6.
			신용장 대금 지급	'24. 11. 18.

※ 자료 : 산림청

또한, 도입 장비의 계약 시점이 대부분 하반기(2024년 기준 9월 ~12월)에 이루어지고 있고, 내자·외자구매 모두 계약 후 제작 방식으로 수령 시기는 최소 5개월 이후인 점을 고려할 때,⁵³⁾ 장비 선정과 입찰절차가 상반기 내에 마무리되지 않는 한 당해

51) 산림청은 2024년도 저장트레일러 장비 예산의 전액 이월 사유를 러·우 전쟁에 따른 선적 지연 및 항로 변경으로 인한 납품 지연으로 설명함.

52) 산림청은 2024년도 임내차 장비의 경우 국내 수요가 높은 일본산 제품을 선정하고, 제작사(일본, 모루오카)에서 일본 및 한국의 수요 증가로 임내차를 선제작함에 따라 제작 및 운송기간이 단축되었다고 설명함(단,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세수부족으로 이월 발생).

53) 2023년 및 2024년 모두 입찰절차 추진 중 1회 유찰 후 연도말에 수의계약 등으로 진행되어 계약 시기가 늦어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023·2024년도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계약 현황 】

편성연도	발주기관	장비종류	계약방식	계약일자
2024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하베스터	일반경쟁	2024-9-23
		포워더	수의계약	2024-11-6
		저장트레일러	수의계약	2024-12-19
		멀처	수의계약	2024-10-29
		임내차	제한경쟁	2024-11-29
2023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멀처	수의계약	2023-10-20
		타워야더	수의계약	2023-12-20
		포워더	수의계약	2023-12-22
		하베스터	일반경쟁	2023-12-26

연도에 예산 전액을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구조로 보임.

참고로, 2025년도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도입의 경우에도 조달 방식은 내자구매로, 2025년 8월 현재 입찰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임.

- 이러한 구조는 사실상 편성연도 예산의 일부에 대한 다음연도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며, 이는 「국가재정법」 제3조⁵⁴⁾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유림임업기계장비보급 사업 중 고성능 임업기계장비는 계약에서 도입까지 2년이 소요됨에도 사업기간을 단년도로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예산의 일부가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산림청은 동 사업의 사업기간을 2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54)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2024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액은 미편성 되었으나, 20억 2,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재산수입 1억 9,900만원, 경상이전수입 18억2,500만원 등 전액 수납(순증)하였음.

☐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음.

【 2024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A)	징 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 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증 감	
						E=C-A	E/A
합 계	-	2,024	2,024	-	-	-	순증
○ 재 산 수 입	-	199	199	-	-	-	순증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	199	199	-	-	-	순증
○ 경상이전수입	-	1,825	1,825	-	-	-	순증
- 기타경상이전수입	-	1,825	1,825	-	-	-	순증

※ 자료: 산림청

2) 세출결산

☐ 2024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미편성 되었음.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2024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액은 미편성 되었으나, 89억 9,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재산수입 2억 8,100만원, 경상이전수입 31억 4,500만원 등 34억 2,600만원을 수납(순증)하였음.

□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 55억 7,100만원은 관계기관 예산부족임.

【 2024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A)	징 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 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증 감	
						E=C-A	E/A
합 계	-	8,997	3,426	-	5,571	3,426	순증
○ 재 산 수 입	-	592	281	-	311	281	순증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	592	281	-	311	281	순증
○ 경상이전수입	-	8,405	3,145	-	5,260	3,145	순증
- 변상금및위약금	-	11	11	-	-	11	순증
- 기타경상이전수입	-	8,394	3,134	-	5,260	3,134	순증

※ 자료: 산림청

2) 세출결산

□ 2024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액은 당초 3,762억 9,2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5억 9,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3,768억 8,900만원으로 증가함.

□ 예산현액 중 임도시설 등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과 탄소흡수원 조성 및 국립수목원 조성 등 산림환경보전 및 증진에 98.5%인 3,712억 6,000만원이 지출되었음.

□ 다음연도 이월액 10억 7,600만원은 임도시설 및 국립수목원 조성에서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45억 5,300만원은 각 비목별 집행잔액임.

【 2024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액 이용액				
[합 계]	376,292	597	-	-	376,889	371,260	1,076	4,553
□ 지역자율계정	167,369	-	-	-	167,369	167,369	-	-
○ 산림자원및산업육성 (1500프로그램)	103,455	-	-	-	103,455	103,455	-	-
- 임도시설	103,455	-	-	-	103,455	103,455	-	-
○ 산림환경보전및증진 (1900프로그램)	63,914	-	-	-	63,914	63,914	-	-
- 탄소흡수원조성	63,914	-	-	-	63,914	63,914	-	-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액 이용액				
□ 지역지원계정	199,313	597	-	-	199,910	194,281	1,076	4,553
○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1500프로그램)	182,813	343	-	-	183,156	177,556	1,076	4,524
- 임도시설	182,813	343	-	-	183,156	177,556	1,076	4,524
○ 산림환경보전및증진 (1900프로그램)	16,500	254	-	-	16,754	16,725	-	129
- 국립수목원 조성	16,500	254	-	-	16,754	16,725	-	29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3,538	-	-	-	3,538	3,538	-	-
○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1500프로그램)	238	-	-	-	238	238	-	-
- 임도시설	238	-	-	-	238	238	-	-
○ 산림환경보전및증진 (1900프로그램)	3,300	-	-	-	3,300	3,300	-	-
- 탄소흡수원조성	3,300	-	-	-	3,300	3,300	-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6,072	-	-	-	6,072	6,072	-	-
○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1500프로그램)	1,322	-	-	-	1,322	1,322	-	-
- 임도시설	1,322	-	-	-	1,322	1,322	-	-
○ 산림환경보전및증진 (1900프로그램)	4,750	-	-	-	4,750	4,750	-	-
- 탄소흡수원조성	4,750	-	-	-	4,750	4,750	-	-

※ 자료: 산림청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임도시설: 과도한 수의계약 방식 개선 필요

- 임도시설 사업은 대부분의 임도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어, 산림청은 향후 임도 계약에 있어서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없도록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임도시설 사업은 임도를 확충하고 유지·관리함으로써 국산목재 공급 기반을 제공하고 산불진화 등 산림재해에 신속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4개 세부사업의 2024년도 예산현액 2,881억 7,100만원 중 2,825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 7,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5억 2,500만원을 불용하였음⁵⁵⁾.

【 2024년도 임도시설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287,828	343	320 △320	288,171	282,571	1,076	4,525	283,960
임도시설(자율)	103,455	-	-	103,455	103,455	-	-	92,579
임도시설(지원)	182,813	343	320 △320	183,156	177,556	1,076	4,525	190,049
임도시설(제주)	238	-	-	238	238	-	-	280
임도시설(세종)	1,322	-	-	1,322	1,322	-	-	1,052

55) 회계(기금)-세부사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임도시설(자율)(1537-301), 임도시설(지원)(1536-302), 임도시설(제주)(1537-301), 임도시설(세종)(1536-301)

나) 검토의견

□ 임대시설 사업과 관련한 2024년도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총 2,058건(금액 277,517백만원)의 계약 중 87.3%인 1,796건(금액 237,217백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음.

특히, 이 중 산림청(지자체 제외)이 발주한 임대 계약 건수의 수의계약 비중은 93.4%로 대부분의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24년도 임대 계약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수의계약				경쟁입찰			
발주	건수	비중	금액	비중	건수	비중	금액	비중	건수	비중	금액	비중
합계	2,058	100	277,517	100	1,796	87.3	239,217	86.2	262	12.7	38,300	13.8
산림청	772	100	151,549	100	721	93.4	141,527	93.4	51	6.6	10,022	6.6
지자체	1,286	100	125,968	100	1,075	83.6	97,690	77.6	211	16.4	28,278	22.4

※ 자료 : 산림청

□ 또한, 전체 임대 계약 중 발주 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임대 계약 금액의 80.8%(총 277,517백만원 중 224,210백만원)를 산림조합과 계약하고 있으며, 산림조합과의 계약 중 수의계약 비중은 97.8%(금액 219,325백만원, 건수 기준

96.7%)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산림조합 임도 계약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수의계약				경쟁입찰			
발주	건수	비중	금액	비중	건수	비중	금액	비중	건수	비중	금액	비중
합계	659	100	224,210	100	637	96.7	219,325	97.8	22	3.3	4,885	2.2
산림청	312	100	133,067	100	307	98.4	132,171	99.3	5	1.6	896	0.7
지자체	347	100	91,143	100	330	95.1	87,154	95.6	17	4.9	3,989	4.4

※ 자료 : 산림청

□ 산림청은 임도 전체계약 중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이유에 대해 견실한 구조물 설치 등 시공 품질 확보와 안정적 사후관리가 필수적인 사업 특성상 충분한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며,

특히, 산림조합과의 임도 계약 및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이유로는 산림조합이 「산림조합법」에 따른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지역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산주가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발표('25.5월)된 감사원의 '산림사업 관리·감독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산림청은 물량 위주의 임도 확대정책을 추

진하면서 공사 관리인력이 부족한 산림조합과의 관행적 수의계약으로 산사태 방지를 위한 구조물 미시공 등 임도 부설시공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⁵⁶⁾

과도한 수의계약으로 산림사업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경쟁입찰 확대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바 있음.⁵⁷⁾

□ 또한, 산림청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1년 9월 임도 등 산림사업의 품질제고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경쟁 비율 확대 및 산림조합의 기술자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한 최대 수주 한도액 관리 등의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한 바 있음.

□ 그러나 최근 5년('20~'24년)간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도 전체 계약 중 평균 90.3%를 수의계약하였고, 산림조합 수주 물량의 평균 96.8%(금액 기준 97.3%)를 수의계약하는 등 임도 사업의 수의계약 비중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56) '21~'23년 신설된 1,531개 임도 중 135개 임도에 대한 점검 결과, 103개 임도의 성토사면 구간에 산사태 방지용 법정 구조물 미시공 등의 문제점이 확인됨.

57) 감사보고서는 지방산림청과 지자체 등이 사후관리가 용이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사 관리인력이 부족한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관행을 지속하고, 산림조합은 발주청 승인 없이 현장대리인 1명에게 최대 6개의 사업현장을 관리하게 하거나, 자격미달자에게 사업현장을 관리하도록 한 것 등이 임도 부설시공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음(「산림기술법 시행령」 등에 따라 산림기술자(현장대리인) 1명 이상을 공사현장에 배치하되, 중복배치 시 발주청의 승인 필요).

또한, '19~'23년 부설시공으로 별점을 부과받은 산림조합 등 136개 사업자가 이후 입찰 및 수의계약 과정에서 아무런 불이익 없이 690건의 산림사업(434억원)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남.

※ '25.6월 기준 산림조합(156개)은 1,194명, 산림사업법인(3,072개)은 14,547명의 산림기술자를 각각 보유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임도 계약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수의계약				경쟁입찰			
연도별	발주	건수	비중	금액	비중	건수	비중	금액	비중	건수	비중	금액	비중
계	합계	9,808	100	1,138,664	100	8,860	90.3	991,505	87.1	948	9.7	147,159	12.9
	산림청	4,335	100	618,386	100	4,203	97.0	587,975	95.1	132	3.0	30,411	4.9
	지자체	5,473	100	520,278	100	4,657	85.1	403,530	77.6	816	14.9	116,748	22.4
2020	합계	1,699	100	175,496	100	1,532	90.2	149,765	85.3	167	9.8	25,731	14.7
	산림청	686	100	82,199	100	654	95.3	74,767	91.0	32	4.7	7,432	9.0
	지자체	1,013	100	93,297	100	878	86.7	74,998	80.4	135	13.3	18,299	19.6
2021	합계	1,782	100	187,834	100	1,621	91.0	161,045	85.7	161	9.0	26,789	14.3
	산림청	748	100	94,887	100	729	97.5	88,668	93.4	19	2.5	6,219	6.6
	지자체	1,034	100	92,947	100	892	86.3	72,377	77.9	142	13.7	20,570	22.1
2022	합계	2,128	100	241,116	100	1,957	92.0	213,320	88.5	171	8.0	27,796	11.5
	산림청	1,074	100	142,760	100	1,059	98.6	139,455	97.7	15	1.4	3,305	2.3
	지자체	1,054	100	98,356	100	898	85.2	73,865	75.1	156	14.8	24,491	24.9
2023	합계	2,141	100	256,701	100	1,954	91.3	228,158	88.9	187	8.7	28,543	11.1
	산림청	1,055	100	146,991	100	1,040	98.6	143,558	97.7	15	1.4	3,433	2.3
	지자체	1,086	100	109,710	100	914	84.2	84,600	77.1	172	15.8	25,110	22.9
2024	합계	2,058	100	277,517	100	1,796	87.3	239,217	86.2	262	12.7	38,300	13.8
	산림청	772	100	151,549	100	721	93.4	141,527	93.4	51	6.6	10,022	6.6
	지자체	1,286	100	125,968	100	1,075	83.6	97,690	77.6	211	16.4	28,278	22.4

※ 자료 : 산림청

【 최근 5년간 산림조합 임대 계약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수의계약				경쟁입찰			
연도별	발주	건수	비중	금액	비중	건수	비중	금액	비중	건수	비중	금액	비중
계	합계	3,330	100	947,081	100	3,225	96.8	921,851	97.3	105	3.2	25,230	2.7
	산림청	1,731	100	560,086	100	1,712	98.9	555,158	99.1	19	1.1	4,928	0.9
	지자체	1,599	100	386,995	100	1,513	94.6	366,693	94.8	86	5.4	20,302	5.2
2020	합계	651	100	147,429	100	624	95.9	140,777	95.5	27	4.1	6,652	4.5
	산림청	310	100	73,801	100	301	97.1	71,471	96.8	9	2.9	2,330	3.2
	지자체	341	100	73,628	100	323	94.7	69,306	94.1	18	5.3	4,322	5.9
2021	합계	591	100	153,593	100	574	97.1	150,049	97.7	17	2.9	3,544	2.3
	산림청	297	100	84,157	100	297	100	84,157	100	-	-	-	-
	지자체	294	100	69,436	100	277	94.2	65,892	94.9	17	5.8	3,544	5.1
2022	합계	726	100	205,303	100	703	96.8	199,352	97.1	23	3.2	5,951	2.9
	산림청	419	100	132,871	100	417	99.5	132,004	99.3	2	0.5	867	0.7
	지자체	307	100	72,432	100	286	93.2	67,348	93.0	21	6.8	5,084	7.0
2023	합계	703	100	216,546	100	687	97.7	212,348	98.1	16	2.3	4,198	1.9
	산림청	393	100	136,190	100	390	99.2	135,355	99.4	3	0.8	835	0.6
	지자체	310	100	80,356	100	297	95.8	76,993	95.8	13	4.2	3,363	4.2
2024	합계	659	100	224,210	100	637	96.7	219,325	97.8	22	3.3	4,885	2.2
	산림청	312	100	133,067	100	307	98.4	132,171	99.3	5	1.6	896	0.7
	지자체	347	100	91,143	100	330	95.1	87,154	95.6	17	4.9	3,989	4.4

※ 자료 : 산림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⁵⁸⁾에 따르면, 계약은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지명경쟁,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산림청은 대부분의 임도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경쟁입찰은 거의 실시하지 않아 해당 법률의 취지와 다른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더욱이, 감사원의 감사결과('25.5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도 개설 등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형태로 몰아준다는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산림청은 향후 임도 계약에 있어서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없도록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형태를 시정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5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 2024년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전입금 414억 1,500만원,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210억 800만원 등 728억 4,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실제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이월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경상이전수입 등 87억 8,600만원이 증가한 816억 2,800만원이 되었음.
- ☐ 징수결정액 816억 2,800만원 중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등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225억 6,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14억 1,500만원 등으로 총 796억 6,300만원을 수납하였음.
- ☐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 19억 6,500만원은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으로 인한 것임.

【 2024년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A)	징 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 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증 감	
						E=C-A	E/A
합 계	72,842	81,628	79,663	-	1,965	6,281	9.4
<손익계정>	36,315	40,899	38,934	-	1,965	2,619	7.2
○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21,008	22,563	22,563	-	-	1,555	7.4
-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21,008	22,563	22,563	-	-	1,555	7.4
○ 재산수입	20	41	41	-	-	21	105.0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0	41	41	-	-	21	105.0
○ 경상이전수입	59	1,976	11	-	1,965	△48	△81.4
- 변상금 및 위약금	1	1,917	-	-	1,917	△1	△100.0
- 기타경상이전수입	58	59	11	-	48	△47	△81.0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	3	3	-	-	2	200.0
- 잡수입	1	3	3	-	-	2	200.0
○ 세계잉여금	5,004	6,093	6,093	-	-	1,089	21.8
- 세계잉여금이입액	5,004	6,093	6,093	-	-	1,089	21.8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0,223	10,223	10,223	-	-	-	-
- 전입금	10,223	10,223	10,223	-	-	-	-
<자본계정>	36,527	40,729	40,729	-	-	4,202	11.5
○ 경상이전수입	-	88	88	-	-	88	순증
- 변상금 및 위약금	-	87	87	-	-	87	순증
- 기타경상이전수입	-	1	1	-	-	1	순증
○ 관유물매각대	20	6	6	-	-	△14	△70.0
- 고정자산매각대	20	6	6	-	-	△14	△70.0
○ 전년도이월금	-	7,790	7,790	-	-	7,790	순증
- 전년도이월금	-	7,790	7,790	-	-	7,790	순증
○ 세계잉여금	5,315	1,653	1,653	-	-	△3,662	△68.9
- 세계잉여금이입액	5,315	1,653	1,653	-	-	△3,662	△68.9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31,192	31,192	31,192	-	-	-	-
- 전입금	31,192	31,192	31,192	-	-	-	-

※ 자료: 산림청

2) 세출결산

- 2024년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예산액은 당초 728억 4,2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77억 9,000만원, 초과 지출 7억 8,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814억 1,800만원으로 증가함.
- 예산현액 중 휴양림 시설조성에 364억 5,800만원, 휴양림 운영에 365억 9,000만원 등 89.7%인 730억 4,800만원이 지출되었음.
- 다음연도 이월액 64억 6,100만원은 자연휴양림조성 사업 등에서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절대 공기 부족으로 64억 4,100만원, 용지매입지연 및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2,000만원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9억 900만원은 비목별 집행잔액 등임.

【 2024년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초과 지출	예비비 사용액	전용액 이용액				
[합 계]	72,842	7,790	786	-	203 △203	81,418	73,048	6,461	1,909
□ 손익계정	36,315	-	786	-	203 △203	37,101	36,590	-	511
○ 산림이용및복지증진 (1700프로그램)	35,034	-	786	-	203 △203	35,820	36,590	-	511
-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 인건비	12,024	-	-	-	-	12,024	11,763	-	261
- 기본경비	1,065	-	34	-	-	1,099	1,079	-	20
- 국립자연휴양림 조성관리	21,480	-	752	-	203 △203	22,232	22,028	-	204
- 건강보험부담금	465	-	-	-	-	465	439	-	26
○ 회계기금간거래 (8400프로그램)	1,281	-	-	-	-	1,281	1,281	-	-
- 공무원연금부담금	1,281	-	-	-	-	1,281	1,281	-	-
□ 자본계정	36,527	7,790	-	-	-	44,317	36,458	6,461	1,398
○ 산림이용및복지증진 (1700프로그램)	36,527	7,790	-	-	-	44,317	36,458	6,461	1,398
- 기본경비	14	-	-	-	-	14	14	-	-
- 국립자연휴양림 조성관리	36,513	7,790	-	-	-	44,303	36,444	6,461	1,398

※ 자료: 산림청